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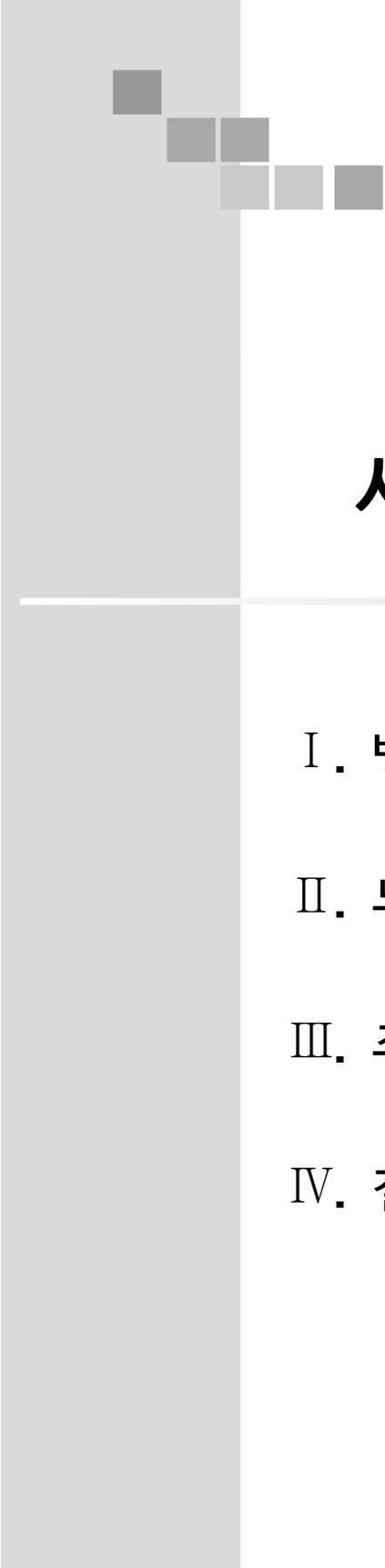
노인복지시설 방문조사 보고서

2009. 12.

**국가인권위원회
침 해 조 사 과**

차 례

 사건조사결과보고서	1
I. 방문조사 개요	3
1. 조사의 배경과 목적	3
2. 추진경과 및 참여 인력	5
3. 조사의 대상과 방법	6
II.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인권	8
1. 시설의 기준	8
2. 노인 인권	16
3. 노인복지시설 인권의 평가지표	19
III. 조사결과	29
1. 갑 요양원	29
2. 을 요양원	39
3. 병 양로원	50
IV. 결론(제안)	60
1. 개선사항	60
2. 검토의견	64
 결정문	65
 부 록	89
1. 설문결과	91
2. 인권평가지표 설문지	93
3.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108



사건조사결과보고서

I. 방문조사 개요

II.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인권

III. 조사결과

IV. 결론(제안)

사건조사결과보고서

[2009년 노인복지시설 방문조사 결과 보고]

I. 방문조사 개요

1. 조사의 배경과 목적

통계청의 ‘2009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아래 [표 1]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3.8%인 145만 명이었으나, 2009년 노인인구는 51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¹⁾

노인복지 예산은 1982년 7억원에 불과하였지만, 2009년에는 2008년에 비해 51.6%가 증액되어 3조1,258억원에 이르러, 지난 30년 동안 노인복지예산 또한 급격히 증가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1.). 이처럼 노인복지 서비스와 급여가 확대됨에 따라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인력 또한 다양화되고 그 수가 급격히 확대되는 등 노인복지 전달체계 역시 매우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표 1]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단위 : 만명, 2010년 이후 : 추정치)

내용 \ 년도	1980	1990	2000	2009	2010	2018	2026
총인구	3,812.4	4,286.9	4,700.7	4,874.7	4,887.5	4,934.0	4,903.9
65세 이상 인구	145.6	219.5	339.5	519.3	535.7	707.5	1,021.8
구성비(%)	3.8	5.1	7.2	10.7	11.0	14.3	20.8

(자료제공 : 통계청)

1)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을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이와 같이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증가에 따라 노인 복지시설을 확대되고 있어 2008. 12. 31. 현재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이 1,638개소(입소정원 78,235명)에 이르고 있으며, 아래 [표 2] ‘노인양로 및 요양시설현황’에 따르면 입소정원이 매년 21% 정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노인양로 및 요양시설현황

(2008. 12. 31.현재, 단위 : 개소, 명)

시 설	2008		2007		2006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합계	1,638	78,235	1,498	64,324	1,166	53,098
양로시설	306	11,520	384	13,014	351	12,509
노인요양시설	1,332	66,715	1,114	51,310	815	40,589

(보건복지부 2009년노인복지시설현황)

노인복지시설의 급증과 함께 시설 거주노인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가정과 같은 세심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설거주 노인의 인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아주 미미한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보호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으면서도 노인의 특성상 구체적이고 개별적 진정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과, 위원회의 인권증진행동계획 5대전략목표 중, “노인·경제적 약자의 인권향상”을 위한 실천과제로서 방문조사를 기획하였다. 방문조사의 목적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이 법령의 규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여 시설 거주노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증진에 기여하고, 시설의 직원 및 거주노인에 대한 설문,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설의 서비스의 질 향상과 시설의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있다.

[표 3]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시설기능별	시설종별	비고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 노인복지주택 ○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전문병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 노인교실 ○ 경로당 ○ 노인휴양소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기타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2. 추진경과 및 참여 인력

가. 추진경과

- 2009. 6. 8 : 노인복지시설 방문조사 결정(침해구제2위원회)
- 2009. 6. 24 : 방문조사 참여 외부전문가 회의
- 2009. 6. ~ 7. : 3개 시설 방문조사 및 의견수렴
- 2009. 11. 16 : 조사결과에 대한 전문가 종합토론

나. 방문조사 참여 인력

방문조사는 외부전문가 5명 및 내부 조사관으로 구성되었다. 외부 전문가는 중 서비스의 질, 노인복지시설 전반에 관하여는 임춘식(한남대 교수, 한국노인복지학회장), 치매예방, 의료서비스 분야는 유원섭(을지의대 교수), 인권침해 분야, 노인 면담은 김효정(한국노인의 전화 과장), 인권침해분야, 시설 전반은 정경희(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팀장), 투약기록, 보건서비스 분야는 신선미(간호학 박사)가 참여하였다.

내부 조사관은 전문가의 조사를 보조하여 시설 및 관리 분야, 관련서류점검, 직원 및 노인 설문조사, 조사 총괄, 보고서 종합 및 기타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

3. 조사의 대상과 방법

위원회 조사대상인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중 수용인원, 조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경기지역 요양시설 2개소 및 양로시설 1개소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표 4] 방문대상 시설현황

시설명	시설구분	개소일	정원	종사자	자원봉사자(연)	비고
갑 요양원	노인요양시설	'08. 7.28	200명	130명	3,959명(연)	
을 요양원	노인요양시설	'01. 6.30.	60명	21명	3,240명(연)	
병 양로원	양로시설	'89.11. 1.	50명	11명	3,479명(연)	

조사의 방법은 체크리스트, 설문지, 관련자 면담 등을 활용하였다. 체크리스트와 설문지는 초안을 작성한 후 외부전문가에 의뢰하여 [표 5] '2009년 노인복지시설 방문조사 체크리스트 구성내역'와 같이 그 구성내용을 완성하였다. 체크리스트의 구성내용은 시설환경, 관리 측면, 서비스의 질, 인권침해 관련 등4개 분야로 구분하였다. 시설환경 분야는 시설의 접근성, 외부환경, 내부환경, 시설설비, 위생상태, 안전관리 등을 조사하였고, 관리 측면은 직원기준, 직원근무형태, 노인기록 충실성, 분리거주, 사망노인관리, 직원교육, 정기적 감독, 의사결정참여 여부 등을 조사하였으며, 서비스의 질 분야는 의류·침구류 청결, 식단·간식 관련, 의료서비스 관련, 자치·야외활동, 외박·외출, 재산관리, 자원봉사자 활동 등을 조사하였고, 인권침해 관련 분야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사생활 및 통신의 자유 등을 조사하였으며, 노인 및 시설 직원에 대해서는 1:1 개별 심층면접(individual in-depth interview)를 실시하였으며, 다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들은 제외하였다.

조사가 끝난 후, 먼저 참여 조사관들이 동석하여 사후 평가회의를 실시하고, 이후 시설 측 관계자들과 함께 방문조사결과 총평을 실시하여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자발적으로 지적사항을 개선토록 유도하였다.

[표 5] 2009년 노인복지시설 방문조사 체크리스트 구성내역

영역	하위영역	영역	하위영역
A. 시설 및 환경 (6개 하위영역)	시설접근성(A1) 외부환경(A2) 내부환경(A3~A6) 시설설비(A7~A11) 위생상태(A12) 안전관리(A13)	C. 서비스의 질 (11개 하위영역)	의류·침구류 청결(C1~C2) 식단·간식관련(C3~C4) 의료서비스 관련(C5~C6) 자치·야외활동(C7~C8) 외출외박(C9) 재산관리(C10) 자원봉사자활동(C11)
B. 관리측면 (8개 하위영역)	직원기준(B1) 직원근무행태(B2) 노인기록 충실성(B3) 분리거주(B4) 사망노인관리(B5) 직원교육(B6) 정기적 감독(B7) 의사결정참여 여부(B8)	D. 인권침해관련(3개 하위영역)	인간의존엄과 가치(D1) 신체의 자유(D2) 사생활 및 통신(D3)
설문지	1. 어르신 대상 설문지 : 생활여건, 종교, 학대여부 등 39개 항목 2. 직원 대상 설문지 : 노인인권에 대한 인지 및 실태 11개 항목		

Ⅱ.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인권

1. 시설의 기준²⁾

노인복지시설의 명칭이 노인복지법의 개정·시행(법률 제8608호, 2007. 8. 3. 개정, 2008. 4. 4. 시행)으로 시설의 명칭이 아래 [표 6] ‘노인복지시설의 분류’와 같이 변경되었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서비스명칭으로 변경되었다.

[표 6] 노인복지시설의 분류³⁾

시설종류	변경 전	변경 후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신설)
	실비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신설)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노인휴양소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간보호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시설	단기보호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신설)

방문조사 대상인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 입소절차, 시설기준 및 직

2) 참고 : 보건복지가족부, 『2009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3)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은 「노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다수인보호시설의 정의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원배치기준을 「노인복지법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2호, 2009. 7. 1. 이하 “규칙”이라 한다.)⁴⁾에 따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양로시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구분된다.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양로시설의 입소 대상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이 아닌 자 중 피학대 노인이나 긴급조치 대상자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과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는 무료입소 대상자이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2008년도 3/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은 1,164,531 원)는 실비입소 대상자이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는 유료입소 대상자이다.

양로시설의 입소절차는 무료입소 대상자는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구에 신청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하여 신청인 및 당해 시설의 장에게 통보한다. 실비입소 대상자는 시설의 장과 입소신청자가 협의한 후 시설의 장이 입소신청자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 심사를 의뢰하고 관할 시군구는 심사결과를 조사의뢰한 시설의 장에게 통보하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거하여 시설에 입소한다. 유료입소 대상자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시설에 입소한다.

4) 2008. 1. 28.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이 개정(제437호)되면서 시설기준이 변경되었다. 다만 부칙의 규정에 따라 규칙시행 후 5년간 유예를 두고 있다.

양로시설의 시설기준은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시설기준, 설비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아래 [표 7], [표 8] 및 [표 9]와 같다.

[표 7] 양로시설의 시설기준

시설별	구분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 및 자원 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 재해 대비 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샤워실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양로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	○	○	○	○	○	○	○	○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	○	○	○	○	○	○	○	○

비고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표 8] 양로시설의 설비기준

<p>가. 침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독신용·합숙용·동거용 침실을 둘 수 있다. (2)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3)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4) 합숙용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5) 합숙용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p>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p> <p>다. 세면장 및 샤워실(목욕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p>라.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마. 체력단련실 :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p>

구를 갖추어야 한다.

바. 의료 및 간호사실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사.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그 밖의 시설

- (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9] 직원의 배치기준

시설별	직종별	시설의 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축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양로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1명	필요수	입소자 50명당 1명	입소자 1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2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입소자 50명당 1명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입소자 12.5명당 1명			1명	1명	
노인공동 생활가정	1명					입소자 3명당 1명						
노인복지주택	1명	1명										1명

- 위생원 및 요양보호사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 ※ 비고 : (1) 사회복지사 :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
- (2) 요양보호사 :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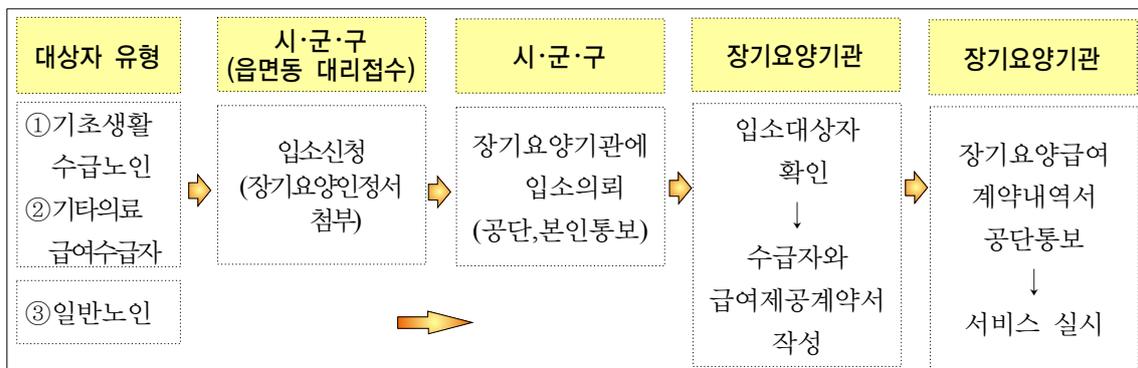
나. 노인요양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으로 구분된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노인전문병원은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이다.

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1~2등급자, 장기요양 3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과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 노인으로서 입소를 위뢰한 노인 및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먼저 양로시설로 보호조치하고 만약 양로시설의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 보호한다.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운영비와 기능보강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에 입소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2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표 10]과 같은 절차에 따라 입소한다.

[표 10]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절차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을 확보하여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한다(다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5.5㎡임)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시설기준, 설비기준 및 직원의 배치기준은 아래 [표 11], [표 12] 및 [표 13]와 같다.

[표 11]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기준

시설별	구분	침실	사무실	요양 보호 사실	자원 봉사 자실	의료 및 간호사 실	물리 (작업)치 료실	프로 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 재해 대비 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이상	○	○	○	○	○	○	○	○	○	○	○	○
	입소자 30명미만 10명이상	○		○		○	○	○	○	○	○	○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		○			○	○	○			○	

[표 12] 노인요양시설의 설비기준

- 가. 침실
- (1) 독신용·합숙용·동거용 침실을 둘 수 있다.
 - (2)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 (3)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한다.
 - (4)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 (5) 합숙용 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6)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7)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8)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두어야 한다.
 - (9) 침실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 (10)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인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 (11)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목욕실

- (1)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마. 물리(작업)치료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의료 및 간호사실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사. 그 밖의 시설

- (1) 복도, 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4)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아.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 13]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축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물리 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요양 시설
노인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추가)	필요수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추가)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수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노인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필요수	1명	필요수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수	필요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1명				1명	입소자 3명당 1명						

- 위생원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영양사 : 영양사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 ※ 비고 : (1) 사회복지사 :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
 - (2) 요양보호사 :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3)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2. 노인 인권

가. 노인 인권 관련 기준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말한다. 「헌법」은 노인만을 주체로 한 기본권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제34조에서 국가에게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향유자로서의 기본권 주체임에 비추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기본권이 노인에게도 보장된다.

「헌법」 제34조의 구체적 실현으로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을 제정(1997. 8. 22. 법률 제5359호로 전면 개정된 것)하여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으며,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여 노인의 생존권 및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 복지는 노인 인권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1991. 12. 16. UN총회에서 채택된 노인을 위한 UN원칙(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은 자립(Indipendence), 참여(Participation), 보호(Care), 자아실현(Self-fulfillment), 존엄성(Dignity) 등 5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1982년 1차 세계고령화회의 이후 2002. 4. 스페인 마드리드에 개최된 제2차 세계고령화회의에서 고령화 대응책 마련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할 정치선언문과 행동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⁵⁾. 노인을 위한 UN원칙과 제2차 세계고령화회의를 통한 노인권의 범주를 살펴보면 노인 인권은 나이, 인종 등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 받을 평등권, 착취와 육체적·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신체적 자유권,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거주·이전의 자유권 등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사회참여 및 자기개발에 관한 자유권, 의식주 및 건강보호 접근권·질병예방과 건강유지에 대한 권리·가족과 지역사회에서 보호받을 권리·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다.

5) 참고 :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Ageing)

나. 노인 인권과 조사 대상 기본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인권의 범주는 모든 국민이 향유하는 기본권의 주체이나 2009년 방문조사에서 중점을 둔 개별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신체의 자유침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 침해 여부이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1945년 국제연합헌장,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66년의 국제인권규약(A규약 前文) 등에 규정하고 있다. 개개의 인간은 국가권력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국가권력의 구성적 지위를 가지게 되며, 개인의 개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일방이 타방의 객체가 아니라 대등한 주체가 되므로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다.⁶⁾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로써 모든 국민은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⁷⁾라고 하여 인간의 존엄성규정의 권리성을 인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이란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⁸⁾.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⁹⁾. 행복추구권은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으로서 행복추구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개별적 기본권들을 제외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들에 대한 포괄적인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며,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 ‘계약의 자유’,

6) 정희철, 『헌법기본강의』, 도서출판 여산(2007년), 280쪽

7) 헌법재판소 1997. 3. 27. 95헌가14

8)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2008년), 381쪽

9) 헌법재판소 1995. 7. 21. 93헌가14 결정

휴식권¹⁰⁾, 자신이 마실 물을 선택할 자유, 수돗물 대신 먹는 샘물을 음용수로 이용할 자유¹¹⁾ 등이 행복추구권의 내용을 이룬다.

신체의 자유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전문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협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¹²⁾.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헌법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다. 그러기에 헌법은 제12조에서 모든 국민의 신체자유보장을 선언하고 그 보장원리로서 적법절차·죄형법정주의·고문금지·사전영장의 원칙·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였고, 제13조에서는 거듭처벌금지, 연좌제의 금지 등을 규정하였으며 나아가서 제27조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함께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보장을 위하여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¹³⁾.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이다. 헌법재판소는 ‘사생활의 자유’란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며, 사생활과 관련된 사사로운 자신만의 영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함께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¹⁴⁾.

통신의 자유는 「헌법」 제18조에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통신의 비밀보호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을 사생활의 일부로서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10)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9 결정

11)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98헌가1 결정

12)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결정

13) 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90헌마82 결정

14)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99헌바92 결정

것이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통신기술의 발달과 광범위한 보급으로 인해 사인에 의한 통신의 비밀의 침해가능성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또한 따라서 통신의 중요한 수단인 서신의 당사자나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될 수 없으므로 서신의 검열은 원칙으로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서신수발의 자유는 통신의 자유의 기본적인 권리인 동시에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보호의 원시적·기본적 수단이다.

3. 노인복지시설 인권의 평가지표

노인복지시설 중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권평가의 틀은 4개 영역과 35개의 하위 영역, 120개의 체크항목으로 구성하여 시설 및 환경, 관리측면, 서비스 질 측면, 인권침해 관련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시설환경측면에서는 시설의 접근성, 외부환경, 안전상태·이동· 쾌적성·공간 등의 내부환경, 식당·화장실·목욕탕·여가프로그램실·오락실·상담실·면회실 등 시설설비, 위생상태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관리측면에서는 직원 기준, 직원 근무시간 및 근무행태, 거주노인들에 대한 기록의 충실성 및 진실성, 분리 거주, 사망노인, 직원교육, 정기적 감독, 의사결정 참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서비스 질 측면에서는 거주노인의 의류 청결상태, 거주노인의 침구류 청결 상태, 식단의 작성 및 공고, 간식제공의 적절성, 치매노인 예방과 치료보호를 위한 노력, 적절한 의료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여부, 자치활동 여부, 공원나들이·공연관람 등 야회활동 여부, 외출이나 외박에 대한 배려 : 가족의 동의 고려, 재산 및 금전처리의 적정성, 자원봉사자, 후원자의 활동 등으로 구성하였다.

인권침해 관련 항목 중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관리자(직원)들의 말투, 종교활동 강요 및 참여여부 결정권, 불만 및 이의 신청에 대한 대응과 조치, 당사자의 동의에 기초하여 수입(경로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액 등) 및 재산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여부, 투명한 시설 운영(기부금 관리 여부 등), 인권함 등 진정함 설치, 교육, 홍보 등 운영 여부, 노인의 입소(위탁)에 대한 거부행위 여부 등이다. 신체의 자유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시설 입소 및 전원 결정에의 당사자 참여 여부, 강제 노동이 있는지 여부, 작업요법의 운영적절성(작업의 자발성-입소자 및 가

족의 동의서, 의사의 작업처방, 적절한 보상, 환경이 좋은 재활작업장 운영 여부), 강제 격리여부, 시설 입소 및 전원 결정에의 당사자 참여 여부, 강제 노동이 있는지 여부, 작업요법의 운영적절성(작업의 자발성-입소자 및 가족의 동의서, 의사의 작업처방, 적절한 보상, 환경이 좋은 재활작업장 운영 여부), 강제 격리, 가혹행위, 폭행 및 상해 행위 여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및 성희롱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보호절차의 불법행위(부양의무가 없는자에 의한 시설 입소 및 긴급입소시 자치단체장에게 지체없는 보고 여부, 6개월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 재결정(자치단체장) 여부 등이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개인정보 관리 및 유출 여부, 통신수단(전화, 서신)이용 및 면회 제한 여부, 시설 외부 출입이 자유로운 환자가 전체 입소자의 몇 %인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비밀 준수 여부 등이다.

가. 시설환경측면

평 가 지 표	내 용
A1. 시설의 접근성은 어떠한가?	주요 공공교통수단(지하철, 버스)의 이용이 용이하거나 인근 주요 상업지역으로부터 15분 이내의 거리이다. 또는 공공 교통수단 이용 가능 지점까지 운영되는 자체 셔틀버스가 있다 : 탁월(4)
	2차적인 교통수단(시외버스, 마을버스)으로 이용가능하며 인근 주요 상업지역으로부터 15분 이상-30분 이내의 거리이다 : 우수(3)
	2차적인 공공교통수단(시외버스, 마을버스)이 있으나 배차시간이 길고(1시간 이상) 인근 주요상업지역으로부터 30분-1시간 이내의 거리이다 : 보통(2)
	택시 등 개인차량으로만 접근 가능하거나 인근 주요 상업지역으로부터 매우 멀리(1시간 이상) 떨어져 있다 : 미흡(1)
해설(A1) : 해당 항목 1개만 기입(○표)	
A2. 외부환경	건물외관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
	시설주위에 공해유발 시설이 없다
	정원 및 원예치료 공간이 있으며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운동장, 산책로가 있으며 관리가 잘 되고 있다
탁월(4가지모두), 우수(3가지), 보통(1~2가지), 미흡(0개 해당)	
해설(A2이하) : 해당 항목 전부 기입(○표). 이하 동일	
A3. 내부환경 1 (안전상태)	실내의 위험요인(가스,전기콘센트,세제,약품 등)이 노인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탈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평 가 지 표	내 용
	추락 등의 위험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필요한 곳에 핸드레일 및 바닥과 계단 등에 미끄럼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탁월(4가지모두), 우수(3가지), 보통(1~2가지), 미흡(0개 해당)
A4. 내부환경 2 (이동)	시설이 단층으로 되어 있거나 복층에 휠체어 사용자가 거주하는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 또는 완만한 경사로가 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편리한 거주실이 있다(문폭, 침대주위 여유 공간 등)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공용공간(화장실, 목욕탕, 식당, 휴게실, 물리치료실)이 있다 시설의 1개 이상 출입구는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다 탁월(4가지모두), 우수(3가지), 보통(1~2가지), 미흡(0개 해당)
A5. 내부환경 3 (쾌적성)	거주실과 활동 공간에 채광이 잘 된다 환기가 잘 되고 있으며 불쾌한 냄새 없다 실내온도가 적당하다(냉난방기 작동여부) 실내의 조도가 적당히 유지된다(조명 밝기) 탁월(4가지모두), 우수(3가지), 보통(1~2가지), 미흡(0개 해당)
A6. 내부환경 4 (공간)	1인당 침실 공간의 면적이 적절하며 개개인을 위한 수납공간이 있다 물리치료 및 프로그램실이 사용노인의 수와 비교해 적절하다 목욕실, 화장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휴게실, 상담실, 면회실이 적절하게 확보되어 있다 탁월(4가지모두), 우수(3가지), 보통(1~2가지), 미흡(0개 해당)
해설 : 거실은 1인당 5.0제곱미터 이상, 합숙용거실의 경우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 물리치료실은 정원의 20% 정도의 인원이 사용할 경우 1인당 1평(100명 시설의 경우 20명×1평=20평) 정도가 적절하다. 프로그램실 및 휴게실은 전체 인원 1인당 0.5평 정도가 적절하나 전반적으로 너무 비좁지 않은가를 확인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직원 업무 공간은 사무실과 간호사실 등을 포함한다.	
A7. 시설설비 1 (식당)	쾌적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휠체어 이용자의 사용이 가능하다 직원이 식사보조를 할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식사준비를 위한 주방공간이 적절히 확보되어 있으며 청결하다 탁월(4가지모두), 우수(3가지), 보통(1~2가지), 미흡(0개 해당)
A8. 시설설비 2 (화장실)	거주노인들이 이용하기에 충분한 수이다 청결하며 냄새가 나지 않는다 미끄럼방지타일 등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장애노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다 탁월(4가지모두), 우수(3가지), 보통(1~2가지), 미흡(0개 해당)
해설 : 거주노인 10인까지 1개 이상의 대변기 설치(매10인 초과시 1개 증설) 대변기수의 3분의 1 이상은 좌식양변기로 설치	

평 가 지 표	내 용
A9. 시설설비 3 (목욕탕)	신체상태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목욕이 가능하다(급탕 설치 여부)
	목욕실의 크기가 사용자나 기구와 비교하여 적절하다
	바닥이 미끄럽지 않게 잘 처리되어 있다
	위급시 필요한 호출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다
	직원이 목욕을 보조하는데 편리하도록 배려되어 있다(탈의실, 수납공간, 작업위치 등)
	탁월(5가지이상), 우수(4가지), 보통(2~3가지), 미흡(0개 해당)
A10. 시설설비 4 (여가프로그램실, 오락실)	이용하기 용이한 위치에 여가 프로그램실이 있다
	T.V., 노래방 등 다양한 오락기구가 비치되어 있다
	이용 노인의 수에 비해 적절한 규모의 공간이 제공되어 있다
	휠체어 이용자의 이용도 가능하다
	탁월(4가지모두), 우수(3가지), 보통(1~2가지), 미흡(0개 해당)
A11. 시설설비 5 (상담실, 면회실)	상담실이 있고 잘 조성되어 있다
	면회실이 있고 잘 조성되어 있다
	상담실이 이용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다
	면회실이 이용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다
	가족이 면회하거나 이용할 공간이 있는가
	집기 등 편의기구 등이 잘 구비되어 있다
	탁월(5가지이상), 우수(4가지), 보통(2~3가지), 미흡(0개 해당)
A12. 위생상태	식기소독을 매일 하고 있다
	식품보관 장소가 위생적이다
	음식공급자가 위생기준을 잘 지키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며 이에 따른 점검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
	식당직원들의 위생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탁월(4가지모두), 우수(3가지), 보통(1~2가지), 미흡(0개 해당)
A13. 안전관리	적절한 소방시설이 되어 있다(스프링쿨러, 급수전, 감지기, 소화기 등 소방법 상의 시설물들의 설치 여부)
	응급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구나 대피도구가 있다
	대피훈련 및 안전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화재 및 대인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용자에게 낙상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탁월(5가지모두), 우수(3가지이상), 보통(1~2가지), 미흡(0개 해당)

나. 관리 측면

평 가 지 표	내 용
B1. 직원 기준 탁월 : 법정기준 모두 충족 우수 : 전문직만 충족 보통 : 법정기준 50%이상 미흡 : 법정기준 50%미만	시설의 장 ○ 양로시설 : 사회복지사 2급이상 ○ 요양시설 : 사회복지사 2급이상 또는 의료인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총무
	생활지도원(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 여자를 수용하는 시설에는 여자생활지도원을 두어야 함
	생활보조원 ○ 양로시설 : 입소자 20인당 1인 ○ 요양시설 : 입소자 7인당 1인
	전담의사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양로시설 : 입소자 50인당 1인 ○ 요양시설 : 입소자 25인당 1인(1인 이상은 간호사로 하여야 한다)
	물리치료사(요양시설의 경우에만 1인 이상, 단 입소자가 100인을 초과할 때 마다 1인씩을 더 두어야 한다)
	사무원(입소자 100인 이상의 시설일 경우에만)
	영양사(입소자 50인 이상일 경우에만)
	취사부, 세탁부(입소자 50인당 각 1인 이상)
B2. 직원 근무시간 및 근무행태(교대 및 주야간)	근무시간 준수여부
	원활한 주야간 교대 여부
	근무기록지 등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B3. 거주노인들에 대한 기록의 충실성 및 진실성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에 의한 진료 및 상담내용이 월 1회 이상의 빈도로 기록
	상담기록의 충실성
	투약등에 대한 기록 여부
	ADL의 정기적 판정
	탁월(주5회이상), 우수(주3~5회미만), 보통(주2~3회미만), 미흡(주 2회미만)
	IADL의 정기적 판정
	(주2회이상 탁월), 2회 미만 미흡
사례회의 (1회성인지, 지속성여부)	
B4. 분리 거주	Case별 파일 기록 및 정리
	남여별 분리 거주(부부가 거주하는 경우 예외)
	거주노인 건강상태별 분리 거주 (전염병, 식중독발생시 제외)
B5. 사망노인	격리실(보호실) 설치 여부 (격리보호실이 있는 경우 용도 및 필요성확인)
	관련규정 여부 및 조치 내용 (체계적인 장례절차, 거주노인참여여부 등)
B6. 직원교육	관리 및 인성관련 정기, 수시교육 탁월 : 전직원 1회이상, 우수 : 50%~100미만이 교육, 보통 : 직원30이상~50%미만 미흡 : 직원30%미만이 교육
B7. 정기적 감독	관리·감독기관의 감독실시여부 및 현황, 내용(별도 첨부)
B8. 의사결정 참여	생활 및 시설운영 등 의사결정에 참여여부(민원함 설치 여부 등)

다 서비스의 질 측면

평 가지 표	내 용
C1. 거주노인의 의류 청결상태 (해당1항목에만 체크)	매일 세탁
	평균 주 3회 세탁
	평균 주 2회 세탁
	평균 주 1회 이하 세탁
	탁월(월 4회이상), 우수(3~4회미만), 보통(2~3회미만), 미흡(월1회이하)
C2. 거주노인의 침구류 청결 상태 (해당1항목에만 체크)	월 1회 이상 세탁 및 일광 소독 (탁월)
	월 1회 이상 세탁 (우수)
	분기당 1회 이상 - 월 1회 미만 (보통)
	평균 분기당 1회 미만 (미흡)
C3. 식단의 작성 및 공급	식단의 변화가 있다
	식단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영양사(보건소장)에 의해 식단을 작성한다
	노인의 기호도나 선호도를 파악하여 식단을 만든다
	탁월(4가지모두), 우수(3가지), 보통(1~2가지), 미흡(0개 해당)
	고혈압 또는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위한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
C4. 간식제공의 적절성 (해당1항목에만 체크)	매일 또는 주 6회 이상 제공 (탁월)
	주 3~5회 제공
	우수(5회 이상), 보통3~5회 미만, 미흡3회 미만
C5. 치매노인 예방과 치료보호를 위한 노력	치매노인예방과 보호를 위한 계획이 있다
	치매예방 프로그램이 있다
	치매교육 받은 전문인력인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있다
	중증의 치매환자의 경우 병원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탁월(4가지모두), 우수(3가지), 보통(1~2가지), 미흡(0개 해당)
C6. 적절한 의료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여부 (건강관리 및 투약)	정기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년1회이상)
	이용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파악하고 있다
	결핵 및 간기능 검사 등 특정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전염병이 있을 경우 필요한 관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용자의 규칙적인 투약여부를 확인하고 있다(투약관리 및 간호일지 기록여부)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정기적인 혈압, 혈당 측정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만성질환자가 년 4회 이상 의사를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될 경우 다른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평 가 지 표	내 용
	만성질환자에게 투약, 증상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거동이 가능한 이용자에게 적절한 신체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적절한 물리치료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다
C7. 자치활동 여부 (해당1항목에만 체크)	노인들의 자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들의 자치활동이 없다
C8.야외활동(온천, 공원 나들이,공연관람 등) 여부 (해당1항목에만 체크)	연 8회 이상 (탁월)
	연 5회이상 - 8회 미만 (우수)
	연 4회이상 - 5회 미만 (보통)
	연 4회미만 (미흡)
	야외활동 없음
온천, 공원나들이, 공연관람, 기관견학, 효도관광, 효도잔치, 외식 등	
C9. 외출이나 외박에 대한 배려 : 가족의 동의 고려 (해당1항목에만 체크)	허용
	외출은 허용, 외박은 불허용
	둘 다 불허용
C10. 재산 및 금전처리의 적정성 (해당1항목에만 체크)	처리규정이 있고 기록으로 남긴다 (탁월)
	처리규정 없으나 사용내용의 기록이 잘 되어 있다 (우수)
	처리규정은 있으나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 않다 (보통)
	아무런 절차나 기록이 없다 (미흡)
C11. 자원봉사자, 후원 자의 활동 (해당1항목에만 체크)	등록자원 봉사자 및 후원자가 있으며 활동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는 있으나 활동을 하지 않는다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도 없고 활동도 하지 않는다
	자매결연기관 혹은 단체가 있다
※. 금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하고 있는가?	금전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시설이 관리하고 관리내용은 정기적으로 알려준다(탁월)
	금전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시설이 관리하고 관리내용은 요청시 알려준다(우수)
	모든 거주노인의 금전을 시설이 관리하고 관리내용은 정기적으로 알려준다(보통)
	모든 거주노인의 금전을 시설이 관리하고 관리내용은 요청시 알려준다(미흡)

라. 인권침해관련 개별조사항목

구 분	내 용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관리자(직원)들의 말투
	종교활동 강요 및 참여여부 결정권
	불만 및 이의 신청에 대한 대응과 조치
	당사자의 동의에 기초하여 수입(경로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액 등) 및 재산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 1년 이하 징역, 100만원 이하 벌금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여부 ● 3년 이하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투명한 시설 운영(기부금 관리 여부 등)
	인권함 등 진정함 설치, 교육, 홍보 등 운영 여부
	노인의 입소(위탁)에 대한 거부행위 여부 ● 50만원 이하 벌금
신체의 자유침해	시설 입소 및 전원 결정에의 당사자 참여 여부
	강제 노동이 있는지 여부 작업요법의 운영적절성(작업의 자발성-입소자 및 가족의 동의서, 의사의 작업처방, 적절한 보상, 환경이 좋은 재활작업장 운영 여부)
	강제 격리여부
	시설 입소 및 전원 결정에의 당사자 참여 여부
신체의 자유침해	강제 노동이 있는지 여부 작업요법의 운영적절성(작업의 자발성-입소자 및 가족의 동의서, 의사의 작업처방, 적절한 보상, 환경이 좋은 재활작업장 운영 여부)
	강제 격리
	가혹행위, 폭행 및 상해 행위 여부 ● 7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및 성희롱행위 ● 5년 이하 징역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신체의 자유 침해	노인에게 구걸을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5년 이하 징역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소홀히 하는 행위 ● 5년 이하 징역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보호절차의 불법행위(부양의무가 없는자에 의한 시설 입소 및 긴급입소시 자치단체장에게 지체없는 보고 여부)
	6개월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 재결정(자치단체장) 여부(생활보장대상노인이 아닌 65세이상의 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에 한함)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개인정보 관리 및 유출 여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 침해 여부	통신수단(전화, 서신)이용 및 면회 제한 여부, 시설 외부 출입이 자유로운 환자가 전체 입소자의 몇 %인가
	직무상 알게된 사항에 대한 비밀 준수 여부 ● 1년 이하 징역, 100만원 이하 벌금

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침해 관련

순번	질문내용 (매우,좋다,좋은편이다,보통이다,나쁜편이다,아주나쁘다)
문1.	침실과 화장실 등 시설전반
문2.	냉·난방시설
문3.	원장 및 관리자들의 관심과 노력
문4.	경로연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과 ○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보다 차상위 계층인 저소득 노인 (1933. 7. 1.이전 출생)에 대하여 지급. 개인에게 지급
문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서 한달에 한번씩 수급액을 지급받고 있는지(해당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 시·도에서 위탁하고 있는 시설일 경우 시설생계비 명목으로 노인 1인당, 월 114,000 시설장에게 지급(그러나 위탁하지 않은 시설일 경우에는 1인 최고액 약 340,000 개인에게 지급)
문6.	개인 돈의 소지 및 사용여부(간식구입 등)
문7.	밥과 반찬의 질
문8.	옷이나 침구 등의 청결
문9.	온수사용
문10.	재활 프로그램
문11.	운동이나 오락
문12.	관리자들(의사 및 간호사 등)과의 충분한 면담 및 상담기회
문13.	지역주민 등의 방문
문14.	종교 활동 가능 여부
문15.	종교활동 강요여부
문16.	불만 및 요구사항 시정조치
문17.	입소(위탁)거부행위
문18.	진정절차에 대한 설명 및 교육 여부(진정함 설치여부 포함)
문19.	개인물품 따로 보관 가능 여부
문20.	옷, 양말, 신발 등 개인별 사용 여부
문21.	언어적 학대 경험 여부 세부내용:
	○ 예) 다른데로 보내버리겠다, 차라리 빨리 죽는게 낫다 등

바. 신체의 자유 침해 관련

순번	질문내용 (매우, 좋다, 좋은편이다, 보통이다, 나쁜편이다, 아주나쁘다)
문22.	입소 및 전원결정의 당사자 참여 ○ 입소경위(자의 혹은 가족요구 등), 퇴소 원하는지(사유) 등
문23.	노동 행위 여부
*문24.	본인 의사와 관계없는 강제 노동
문25.	노동 후 돈의 지급
*문26.	신체 학대행위 경험 (본인)
*문27.	신체 학대행위 목격여부(타인)
문28.	보호실, 격리실 등의 운영(외부 차단을 의미)
*문29.	보호실, 격리실 등에 장시간 감금
*문30.	성폭행 및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
*문31.	구걸을 강요하는 행위

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 침해 관련

순번	질문내용 (매우, 좋다, 좋은편이다, 보통이다, 나쁜편이다, 아주나쁘다)
문32.	전화사용 ○ 일주일에 몇 회 등
문33.	편지이용
문34.	면회 ○ 횟수, (지정)요일, 시간상의 제한이 있는지?
문35.	시설외부출입 (치료상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주 몇 회로 한정되어 있는지, 귀가시간은 몇 시인지 등

Ⅲ. 조사결과

1 / 갑 요양원

가. 시설의 개요

갑 요양원은 2008. 7. 24. ○○시로부터 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인가를 받아 2008. 7. 30. 개원하였으며 ○○시에 소재하고 있다. 인가된 정원은 200명이며 방문 당시 입소노인은 196명(남 106명, 여 90명)으로 타 시설에 비해 남성노인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2009년 예산은 약 4,606백만원으로 건강보험급여 등 보조금이 85%이며 입소자 1인당 예산은 약 2,350만원이고 직원은 모두 130명이다. 2009. 5. 31. 현재 자원봉사자는 2,092명(단체 1,609, 일반 214, 청소년 269)이 등록되어있고, 대한적십자사 ○○지사, 신한은행 ○○지역 16개지점, 제○○전투비행단, ○○여대 등 50여개 단체가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었다.

[표 14] 갑 요양원 기본사항 (2009. 5. 31 현재)

구분		내용
시설	소재지	경기 ○○시
	규모	대지 13,744㎡, 건물연면적 7,934㎡(지하1, 지상3층)
입소인원	정원	200명
	현원	196명(남 106명, 여 90명) ; 정원 충족률 98%
2006년 예산	연간 예산	4,606백만원 (보조금 3,918, 기타 688)
	입소자 1인당 예산	2,350만원
직원	전체 직원	130명(사회복지사 등 자체직원 30명, 요양보호사 등 외주용역 100명)
	직원 1인당 입소자수	1.5명
자원봉사자	연인원	3,959명
	일평균 자원봉사자	16명
후원금		58,907천원 (전체 예산 중 1.28%)

본 요양원은 복권기금(160억)으로 건립되어, 시설면에 있어 요양실 56개소, 물리치료실 2개소, 프로그램실 3개소, 세면장 및 목욕실 55개소, 의료 및 간호사실 5개소, 요양보호사실 3개소, 식당 및 세탁장 각1개소, 자원봉사자실 2개소 등이 갖추어져 있어 타 시설에 비해 우수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다만, 타 시설에 비해 시설운영여건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시설개원이 1년이 지나지 않은 점, 시설관리자들의 요양원 운영경험이 많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거주노인별 정기적인 상담기록이나 특이사항 기록의 부실, 시설에 비해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문제점도 발견되었는 바, 이러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운영에 있어 관련전문가의 참여가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였다.

나. 주요 조사내용 및 실태

1) 시설·환경 측면

(가) 시설의 접근성

본 시설은 ○○시내 2차선 도로에 접하고 있고 주변에 ○○도교육청, ○○지청, ○○교육원 등이 위치하고 있어 시설의 접근성이 우수한 편이다.

(나) 외부환경

건물외관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고, 1층에 중앙정원, 2층에 치유정원, 3층 옥상 넓은 공간에 잔디와 등나무 벤치, 나무산책로 등과 야외산책로 등을 갖추어 입소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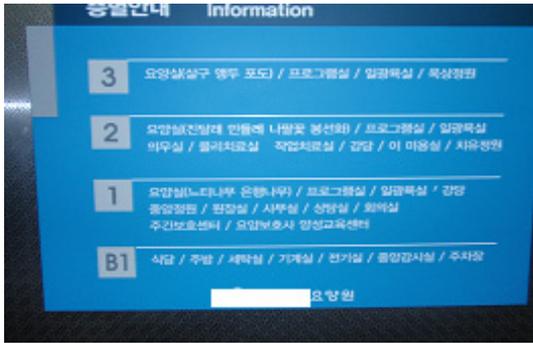
〈그림 1〉 요양원 전경



〈그림 2〉 3층 옥상 정원

(다) 내부환경

각 거실마다 화장실이 설치되어있고 복도, 거실 등 필요한 곳에 핸드레일과 각층에 장애인용 승강기가 설치되어있어 이동에 불편함이 없어보였으며, 거실 등 실내공간이 넓고 채광이 잘되어 쾌적하고 전반적으로 환기가 잘되고 있었으며 실내온도와 조도도 양호한 편이었다.



〈그림 3〉 각 층별 안내판



〈그림 4〉 층별 복도

노인들이 생활하는 거실은 4인용 48실, 1인용 8실로 이루어져있는데 모두 침대시설이 되어있었고 각 침대마다 비상호출기가 설치되어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었고, 1인당 침실 공간의 면적은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거주실 내 개인별 수납장이 구비되어 있었다.

(라) 시설·설비

식당은 지하에 직원식당이 있었고, 노인들의 식사는 건강상태에 따라 각방 침실에서 식사를 하거나 각층 휴게공간을 식당으로 적절히 활용하고 있었으며, 거실 내 화장실 및 공용화장실은 모두 양변기 형태로 설치되어 있었고 비교적 청결한 상태였으나 거실 내 화장실에서 약간의 불쾌한 냄새가 난다는 말씀을 하시는 입소노인이 몇 명 있었다.

목욕은 몸이 불편하신 노인은 목욕기계가 설치된 목욕탕을 이용하고, 이동이 양호한 노인은 주로 거실 내 화장실을 목욕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다만, 공용목욕탕 1개소가 있었으나 방문조사 당시 문이 잠겨있는 등 활용도가 극히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각층마다 복도에 휴게실과 프로그램실 겸용 공간을 확보하여 거주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가족면회실, 상담실이 잘 갖추어져 있었고, 2층에는 물리치료실

과 작업치료실을 충분한 공간으로 확보하고 노인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을 비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었다. 다만, 각층 비상구 표시 등 안내문구를 노인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크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림 5〉 각층 휴게 및 식당공간



〈그림 6〉 기계목욕실



〈그림 7〉 물리치료실 및 작업치료실



〈그림 8〉 가족면회실

(마) 위생상태

식기소독은 매일하고 있었고, 주방 및 식품보관 장소는 모두 최신시설이라 위생적이었고, 영양사 2명과 조리원 11명은 모두 외주업체(○○푸드스트) 소속으로 위생교육 등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바) 안전관리

스프링클러, 급수전, 소화기 등 소방법상의 시설물들이 적절히 설치되어 있었고, 대피훈련 및 안전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2, 3층에 설치된 경사강하식 구조대는 노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일반적인 비상구조 장비이므로 비상사태발생시 노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보였고, 요양보호사에게만 실시하고 있는 낙상예방을 위한 교육도 거주노인과 다른 직

원들에게도 확대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림9〉 각층 소화전



〈그림10〉 2,3층 경사강하식 구조대

2) 관리 측면

(가) 직원기준 등 일반적인 관리실태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2급이며, 사회복지사 1급 4명 이외에 촉탁의가 1명 있고, 간호사 10명, 간호조무사 2명, 물리치료사 3명, 작업치료사 1명, 사무원 6명, 관리인 5명 등 요양원 직원 33명이 근무하고 있고, 요양보호사(80명)와 영양사 및 조리원(13명), 위생원(4명)은 특이하게 모두 외주업체용역을 통해 관리하고 있었으며 법정직원 수(122명)에 비해 현원(130명)이 많았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숫자가 많아 요양원 측에서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할 방안이 필요해 보였으며, 시설운영책임자들의 요양원 운영경험이 많지 않아 보였고 6인으로 구성된 시설운영위원회에 복지시설운영전문가의 참여가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나) 거주노인 등에 대한 기록의 충실성 등

거주노인들에 대한 상담기록은 입소초기 상담기록만 있고 월 1회 이상의 빈도로 기록되고 있지는 않았으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에 의한 진료나 상담내용은 비교적 충실하게 기록되고 있었다. 거주노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케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거주노인별 행동 특이사항 등에 관하여 주 3회 정도의 빈도로 기록화 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련교육이 필요해 보였다.

ADL¹⁵⁾ 또는 IADL 등 입소자의 기능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작업치료

15)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일상생활 활동측정, 옷 양치, 목욕 등을 혼자 할 수 있는지 측정) IADL(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손톱, 화장, 면도, 청소 등을 혼자 할 수 있는지 여부 측정)

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고, 갑작스런 시각장애, 식사거부 등 노인별 발생된 문제 해결을 위한 직원들 간 사례회의도 3개월마다 시행되고 있었다.

(다) 직원교육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직원의 진술이 있었으나, 관련기록을 제대로 볼 수 없었는바, 요양시설에서의 교육내용에 맞게 안전과 건강, 그리고 노인의 삶의 질, 인간존엄과 관련된 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실시될 필요가 있어 보였다.

(라) 의사결정 참여

거주노인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구나 방안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보였고, 의견 수렴함이 각층 엘리베이터 옆에 비치되어 있었으나 거주노인들이 평시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이므로, 각층 휴게실 등 거주노인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추가로 설치하고, 의견수렴함의 기능과 위치를 거주노인 모두에게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해보였다.



〈그림 11〉 각층 엘리베이터 옆 의견수렴함

3) 서비스 질 측면

(가) 식단의 작성 및 공고

영양사에 의해 식단이 작성되고 게시판에 공고되고 있었으나, 거주노인들의 기호나 선호도 파악을 위한 조사는 시행한 바 없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일반 식단 염분량의 2/3 수준으로 제공하고, 당뇨병 환자의 경우 식단의 총열량, 탄수화물 비중을 조절하여 제공하는 등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식사요법을 시행하고 있었다.

(나) 치매노인 예방과 치료보호

거주노인 196명 중 치매환자는 97명(49.5%)이며, 거주노인의 인지기능, 신체기능, 정서적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2009년 하반기부터 별도의 치매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간호사 인력 중 치매 전문교육 이수자가 1명 있었다.

(다) 적절한 의료서비스 및 상담서비스 제공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을 위한 건강검진(종합검진)은 '08년 1회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검진기록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염병발생시에 대비하여 감염관리지침서를 관리하고 있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일 1회(필요시 수시), 당뇨병 환자의 경우 주 1회(상태별로 일 2회) 혈당측정을 하고, 시설의 촉탁의가 일 2회 회진을 실시하며, 거주노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될 경우 인근 동○○병원과 협약을 맺고 있으며 보호자가 원하는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다만, 요양원 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들이 흔한 건강문제(치매, 낙상, 고혈압, 당뇨병 등의 흔한 만성질환, 우울증 등 노인의 정서적 문제 등에 대한 현황과 효과적인 관리방법, 노인의 특성 등) 등에 대하여 요양시설 인력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별도의 요양서비스 관련 외부 전문 교육훈련 참여를 지원하는 등 인력의 전문화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도 있었다.

[표 15] 거주노인 질환별 현황

질환명	합계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기타
인원	196명	97	53	23	23

(라) 거주 노인의 의류 및 침구류 청결 상태

각층에 세탁물 보관소를 두고 있었고 외부용역업체 위생원 4명이 세탁물을 관리하며 세탁물이 있는 경우 수시로 세탁하고 있어 노인들의 의류와 침구류 상태가 대부분 깨끗하게 정리 정돈되어 사용하고 있었다.

(마) 간식 제공의 적절성

간식은 매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었고, 일부 후원 식품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균

형있는 영양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바) 자치 활동 운영 여부

노인들에 의한 자치 활동은 아무런 기록이 없었으며, 노인들의 자치조직 활동이 필요함은 인지하고 있었다. 노인의 자치활동은 담당 종사자의 전문적 개입으로 프로그램과 연결시켜 노인들 간의 상호 의견을 교류, 친선 도모, 공동생활에의 적응, 시설 운영의 이해를 위해 시설 운영의 가용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 야외활동

거주노인들은 주로 시설내부 1층의 치유정원과 2, 3층의 정원을 오가며 일광시간을 갖고 있었고, 연간 행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봄철에 미니나들이를 하고 있었으나, 노인들의 특성에 맞게 보다 계획적인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다.

(아) 외출이나 외박에 대한 배려

원할 경우 종사자와 상담하여 건강상태나 가족의 동의를 고려하여 수시로 외출이나 외박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나, 외출 외박에 관련된 일지나 기록은 없었다.

(자) 자원봉사자, 후원자의 활동

2009. 5. 31.현재 자원봉사자는 2,092명(단체 1,609, 일반 214, 청소년 269)이 등록되어 있고, 대한적십자사 ○○지사, 신한은행, 제○○전투비행단 등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운영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에 노력하고 있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이 대부분 토요일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4)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 종교활동 강요 및 참여여부 결정 관련

종교에 대한 강요는 없는 반면, 거주노인들의 종교 활동참여는 기독교만 가능하므로 다양한 종교활동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었다. 미사에 참여하고 싶으나 참여할 방법이 없다는 거주노인의 불만이 있었고, 이동차량이나 종교 활동장소 제공 등 시설 측면의 배려 및 조치가 없어서 종교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나) 개인 통장 관리 관련

주로 보호자가 있는 시설의 특성상 거주노인의 통장관리 등 개인재산에 대해 시설 측에서는 관여하고 있지 않았다.

(다) 프로그램 관련

본 시설에서의 활동프로그램은 재활프로그램 6종(원예치료, 치료레크레이션, 미술치료, 인지치료, 실버요가, 기공체조), 정서지원 프로그램 6종(음악치료, 독서치료, 영화감상, 웃음치료, 심리치료, 음식만들기) 등 모두 12종류의 프로그램이 주 1~2회 운영되고 있었으나, 타 시설과 비교할 때 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림 14〉 프로그램 운영모습



〈그림 13〉 강당에서의 영화감상

(라) 인권위 진정함 설치

인권위 진정함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각층 엘리베이터 옆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수렴함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거주노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였다. 방문 조사이후 시설 측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작한 인권위 진정함을 제공하였고 노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 기부금(후원금) 운영 관련

연간후원금은 58,907천원, 후원자 50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후원물품 수입 및 사용내역이 비교적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5) 신체의 자유 침해 관련

본 시설은 2009. 5. 12.~5.14. 요양보호사들의 노인학대문제로 중부일보, KBS 등

언론의 기사화가 되어, 이미 ○○중부서의 수사 및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조사가 있었던 사례가 있어 거주노인들을 상대로 면담 시에 학대행위여부에 대해 파악해보았으나 별다른 피해자 진술을 확보할 수 없었다. 다만, 80여명의 요양보호사 관리를 외주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었고, 2009. 7월경 새로운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요양보호사를 관리하고 있다.

시설 측에서는 노인학대 기사화이후 언론중재위 제소여부 등 명예회복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 하며, 추후 이러한 일을 오히려 발전의 계기로 삼아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다.

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 침해 여부

전화사용, 편지이용, 면회, 시설외부출입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 각층 복도 등에 설치된 CCTV는 노인들의 사고예방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이에 대한 안내문이 없었는 바, 누구나 설치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고지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림14〉 2층 간호사실 CCTV 메인PC

가. 시설의 개요

을 요양원은 1993. 11. 27. 설립, ○○시 무료양로원 시설신고 1호로 등록되어 양로원으로 운영되다가 2007. 3. 16. 무료노인요양시설로 인가를 받아을 요양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 ○○시에 소재하고 있다. 인가된 정원은 60명이며 방문 당시 입소자는 55명(남 5명, 여 50명)이었다.

2009년 예산액은 약 924백만 원으로 예산의 약 72%가 정부보조금 등이었으며 입소자 1인당 예산은 약 16,798천원이고 직원은 모두 21명으로 사회복지사 2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요양보호사 12명, 기타 영양사 및 조리원 등으로 구성되어있었으며 직원 1인당 입소자 수는 2.6명이었다.

자원봉사자는 연인원 3,240명으로 일 평균 9명, 일평균 자원봉사자 1인당 입소자 수는 6.1명 수준이었으며 연간후원수입은 81,874천원으로 연간 예산의 8.86%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16] 을 요양원 기본사항(2009. 5. 31 현재)

구분		내용
시설	소재지	경기 ○○시
	규모	대지 14,088㎡, 건물연면적 1,769㎡(지하1, 지상3층)
입소인원	정원	60명
	현원	55명(남 5명, 여 50명) ; 정원 충족률 92%
2009년 예산	연간 예산	924백만원(보조금 757, 기타 167)
	입소자 1인당 예산	16,798천원
직원	전체 직원	21명(사회복지사 2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요양보호사 12명, 영양사1명, 조리원2명, 위생원 1명)
	직원 1인당 입소자수	2.6명
자원봉사자	연인원	3,240명
	일평균 자원봉사자	9명
후원금		81,874천원 (전체 예산 중 8.86%)

본 요양원은 ○○법인 ○○마을에서 1993년 설립하여 양로원으로 운영되다가 2005년 국고기능보강 사업으로 치매노인거실 등을 보수하여 현재 노인요양원으로 운

영하고 있으며 외관상 내부시설물이 상당히 협소·노후화되어 새롭게 개보수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었고, 2008. 10. 8. 인근에 노인전문요양원을 착공하여 2009. 12월말 완공을 목표로 방문조사 당시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2008. 7. 1.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별로는 입소노인 55명중 1등급 7명, 2등급 8명, 3등급 7명, 등급외자도 33명이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분류로는 차상위계층 1명이외 기초생활수급자가 54명이었다.

나. 주요 조사내용 및 실태

1) 시설·환경 측면

(가) 시설의 접근성

본 시설은 면소재지로부터 1.7km² 떨어진 산골에 위치하고 있어 택시 등 개인차량으로만 접근이 가능하여 외부와의 접근성이 열악한 편이었다.

(나) 외부환경

건물외관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고 주변 자연경관이 아주 좋은 환경이었으나, 시설에서 100m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축사로 인해 악취가 있고 시설주변에 파리 등 해충이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시설외부에 정자를 짓고 현관에서 외부산책로를 연결하여 입소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었다.



〈그림16〉 외부산책로와 휴식공간

〈그림15〉 건물외관

(다) 내부환경

세탁실, 식당 등 실내에 일부 전기콘센트가 덮개가 없이 노출되어 있어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1, 2층간 계단이동은 최근 시설 내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하여 계단사용

을 금지하고 있었고, 홀로 이동하는 노인의 경우 이동 경사로를 이용하여 층간 이동을 하고 있으나 이동거리가 멀어 다소 불편해보였으며, 휠체어를 사용하는 노인(12명)의 경우에는 이동시에 반드시 보조직원이 함께하여 사고의 위험은 없어 보였다.

거실의 경우 2~3명이 생활하는 12개의 방과 주로 치매노인들이 생활하는 관음실, 외상노인들이 생활하는 보현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1·2층에 3명이 생활하는 102, 103, 105, 206, 208호실의 면적(13.5㎡)과 4명이 생활하는 208호실의 면적(16.5㎡)이 1인당 거실면적의 법정기준(5㎡)을 위반하였다.



〈그림17〉 1,2층간 이동 경사로



〈그림 18〉 3인용 거실공간

(라) 시설·설비

화장실과 목욕탕의 바닥은 미끄럼방지 타일로 시공되어 있었으나, 화장실의 경우 1,2층에 남여 공용화장실이 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었는데, 외부손님이 많이 이용하는 1층 화장실내에는 방향제와 핸드드라이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입소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2층 화장실에는 방향제와 핸드드라이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2층 남자화장실에는 세면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화장실과 목욕탕에 비상호출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노인들의 갑작스런 사고발생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였다. 물리치료실, 세탁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프로그램실은 2층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대형 TV와 피아노, 미니 당구대 등을 설치하여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공용식당은 1층에 별도로 설치하여 40~50명의 거주노인들이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었다.



〈그림20〉 공용목욕탕

〈그림19〉 1층화장실 핸드드라이



〈그림21〉 1층 공용식당

〈그림22〉 2층 프로그램실

(마) 위생상태

2008년 2차례 관할구청의 위생점검과 시설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하고 있었고 식자재는 별도의 대형냉동 창고에 보관하는 등 청결한 위생상태 유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었으나, 식당주방 내 잔반통은 덮개가 없고, 폐수저와 양념 통이 주방 내 늘려있고 주방시설이 노후화되어 이의 개선이 시급해 보였다.



〈그림23〉 주방문턱 위 폐수저방치

〈그림24〉 주방 내 양념통



〈그림26〉 주방내 식칼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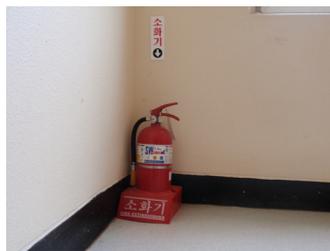
〈그림25〉 주방내 잔반통

(바) 안전관리

직원 및 입소자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요령 및 소화기사용법, 낙상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식당, 복도 등 화재취약지에 소화기 13대가 비치되어 있고 각층에 투척용소화기 비치 및 각방에 열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으나, 2, 3층 거주자의 경우 응급시 대피할 수 있는 도구나 장치가 없었다.



〈그림27〉 각종 투척용소화기



〈그림28〉 복도 소화기



〈그림29〉 각방 열감지기

2) 관리 측면

(가) 직원기준 등 일반적인 관리실태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1급이며, 사회복지사 1인 이외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각 1명, 물리치료사 1명, 영양보호사 12명, 영양사 1명, 조리원 2명, 위생원 1명 등 21명이 근무하고 있어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55명에 필요한 인력 기준 18명보다 3명이 많았으나 총무 역할을 하는 사무국장이 공석이였다. 전담의사나 촉탁의사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지역사회내 협력병원을 이용하여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라는 직원의 설명이 있었으나, 응급상황시 협력병원까지의 이동시간이 차량으로 10여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입소자의 건강문제에 있어 응급상황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더욱 요구된다.

직원들은 21명으로 3교대 근무를 통해 원활하게 주·야간 교대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매일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간호인력은 2인뿐으로 3교대 근무 시 건강전문가가 시설 내 없는 시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요구된다 할 수 있으므로, 응급상황을 잘 대비하기 위한 응급조치 매뉴얼이나 훈련, 또 각 직원의 전공특성을 고려한 근무시간의 배치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

(나) 거주노인 등에 대한 기록의 충실성 등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에 의한 진료나 상담내용이 월 1회 이상의 빈도로 기록되고 있지는 않았으나, 상담내용은 비교적 충실하게 기록되고 있었고, 투약 등에 대한 기록은 간호사에 의해 비교적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케이스별로 자료를 기록하고 정리하고 있었으며, ADL 훈련은 매일 실시한 후 기록하고 있었으나 사례 회의에 대한 기록은 충실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제한된 일손으로는 기록을 매번 할 수 없다는 직원들의 진술이 있었다.

거주노인은 남·녀 각각 분리되어 거주하고 있었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노인은 관음실 등 별도의 격리거실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격리거실에는 직원이 상주함으로써 안전한 격리를 고려하고 있었으나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때에는 문을 잠깐 잠그는 조치를 한다는 직원의 진술이 있었다. 그러나 잠금 조치보다는 다른 직원이 대리하여 격리실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다) 직원교육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은 실시하고 있었으나 정기 교육의 형태는 아니었고, 특히 직원교육 중 50%가 직원의 성희롱 관련 교육이었다. 그러나 요양시설에서 교육내용이어야 함을 고려할 때 안전과 건강, 그리고 노인의 삶의 질, 인간존엄과 관련된 교육 내용이 부족하였다.

(라) 의사결정 참여

거주노인들이 의사결정 참여는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직원의 진술이 있었고, 민원함은 1층 입구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민원함의 위치를 거주노인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민원함의 기능과 위치를 입소자 모두에게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대부분의 노인은 글을 써 민원을 제기하기 어려우므로 현실

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3) 서비스 질 측면

(가) 식단의 작성 및 공고

영양사에 의해 식단이 작성되고 게시판에 공고되고 있었으나, 거주노인들의 기호나 선호도 파악을 위한 조사는 시행한 바 없었으며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의 식사요법을 위한 별도의 식단을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나) 치매노인 예방과 치료보호

입소자 55명 중 치매환자는 8명(14.5%)이며, 별도의 치매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았으며, 간호사 인력 중 치매 전문교육 이수자가 1명 있었다.

주로 의료법인 ○○마을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축탁의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입소자에게 약물처방을 하고 있으며, 인근 협력병원을 통해 입원치료서비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다) 적절한 의료서비스 및 상담서비스 제공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을 위한 건강검진(종합검진)은 년 1회 ○○도립병원이 방문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 보건소 치매예방센터가 방문하여 치매선별검사(MMSE)를 시행하고 있다. 정기검진시에 결핵 및 간기능 검사 등 특정 검진도 실시하고 있었다.

주 1회 (필요시 수시로 측정), 고혈압 환자의 혈압 및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측정하고 있었으나, 만성질환자에게 투약, 증상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았다. 또한, 물리치료실 공간이 협소하며, 물리치료 장비의 보완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실내 또는 실외 신체활동의 기회가 제한적이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노인의 신체활동을 보조할 도우미가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자원봉사자, 영양보호사 등의 인력을 확충하여 거주노인들에게 신체활동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치료목표 혈압 또는 치료목표 혈당 수준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간호팀이 확인하고, 투약과 식단 조절, 신체활동, 체중조절 등을 통해 치료목표 혈압 또는 치료목표 혈당 수준 이하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적절한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식단 개발의 필요성이 있었다.

필요시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혈압, 당뇨병 등 입소자가 가지고 있는 흔한 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 및 관리방안을 개발하여 입소자에게 양질의 질병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요양원의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입소자가 흔히 가지고 있는 질병이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으로 약물요법 이외에 적절한 식사와 신체활동, 체중조절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7] 거주노인 질환별 현황

질환명	합계	치매	뇌졸중	고혈압	파킨슨	기타
인원	55명	8	4	12	3	28

(라) 거주 노인의 의류 및 침구류 청결 상태

실내세탁장 1개소 및 위생원 1명이 세탁물을 관리하고 있었으나, 거주노인의 침구류 세탁 및 일광소독 등이 매우 불량한 상태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이 필요하였다.

(마) 간식 제공의 적절성

간식은 매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었고, 일부 후원 식품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균형있는 영양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바) 자치 활동 운영 여부

노인들에 의한 자치 활동은 아무런 기록이 없었으며, 금년도에 거주노인 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으나 논의내용이 생활규칙이나 공동생활준수사항 등 전달사항뿐 이었고 노인들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노인의 자치활동은 담당 종사자의 전문적 개입으로 프로그램과 연결시켜 노인들 간의 상호 의견 교류, 친선 도모, 공동생활에의 적응, 시설 운영의 이해를 위해 시설 운영의 가용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 야외활동

거주노인들은 주로 시설 앞마당의 휴게정자를 오가며 운동과 휴식, 일광시간을 갖고 있었고, 연간 행사계획에 따라 매년 2회 야외나들이 계획이 되어있었으나 예산이 전혀 배정되어 있지 않았고 금년도에는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 외출이나 외박에 대한 배려

시설의 접근성이 아주 열악하며, 거주노인들이 보호자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외출 외박이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자) 자원봉사자, 후원자의 활동

2009. 5. 31. 현재 자원봉사자는 320명이 등록되어 있고, 매년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하고 있었으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전문교육 등 관리체계가 부족하였으며, 연간 후원자는 기업체, 지역주민 등 24명으로서 별다른 활동이 없었다.

4)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가) 종교활동 강요 및 참여여부 결정 관련

요양원 2층에 법당이 있어 불교를 믿는 거주노인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그 외 다른 종교활동을 위한 배려나 여건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다른 종교를 믿는 노인들을 위한 차량지원 등 세심한 배려 및 조치가 필요하였다.

(나) 개인 통장 관리 관련

거주노인들의 통장을 사무실에서 일괄 관리함으로써 노인들은 자신의 통장에 수입 및 지출 잔고 현황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노인들이 용돈을 사용하는 경우는 요양원에서 봉고차를 타고 한 달에 한 번씩 장터에 가는 날 뿐이라는 불만이 있었고 자신의 재산이라는 권리의식이 부족하였다.

시설 측에서는 노인들이 통장잔고를 물어보면 알려주고 있고 사전 동의를 받아 일괄관리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으나, 통장은 개인재산이므로 스스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

(다) 프로그램 관련

본 시설에서의 활동프로그램은 건강치료서비스 2종(수지침, 생활체조), 정서지원 서비스 7종(레크리에이션, 나들이, 생신잔치, 어르신간담회, 영화감상, 효도관광, 공연관람), 기능회복서비스 8종(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시장보기, ADL훈련, IADL훈련, 산책, 인지교실) 등이 분기1회~월 20회 계획되어 있었으나, 실제 나들이, 효도관광, 공연관람은 시행되지 않았다.

(라) 인권위 진정함 설치

인권위 진정함은 1층 사무실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어서 진정함을 이용하는 것이 직원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었고, 진정함이 있는지 조차 노인들은 모르고 있었다. 방문당시 위원회에서 제작한 인권위 진정함 및 안내문을 제공하였고 현재 노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28〉 1층 사무실 앞 인권위 진정함

(마) 기부금(후원금) 운영 관련

연간후원금은 17,246,500원, 후원자 24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후원물품 수입 및 사용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4) 신체의 자유 침해 관련

거주노인들을 상대로 강제노동행위는 없었으며, 보호실 또는 격리실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노인학대는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 침해 여부

전화사용, 편지이용, 면회, 시설외부출입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 각층 복도 등에 6대의 CCTV가 노인들의 사고예방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노인들은 설치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안내문이 없었던 바, 누구나 설치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고지할 필요성이 있었다.

시설이 지리적인 여건이나 운영,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폐쇄적인 느낌이 강하므로 향후 시설을 외부에 개방하고 접근성을 높여(인터넷, 행사 등을 적극 활용) 외부 기관과의 네트워킹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29〉 복도 CCTV

〈그림30〉 관음실내 CCTV 메인PC

가. 시설의 개요

병 양로원은 1989. 11. 7. ○○시로부터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로 신고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 ○○시에 소재하고 있다. 인가된 정원은 50명이며 방문 당시 입소자는 48명(남 15명, 여 33명)이었다.

2009년 예산액은 약 703백만 원으로 예산의 약 65%가 정부보조금 등이었으며 입소자 1인당 예산은 약 14,642천원이고 직원은 모두 11명으로 사회복지사 2명, 간호사 1명, 요양보호사 4명, 영양사 1명, 기타 조리원 및 위생원 등으로 구성되어있었으며 직원 1인당 입소자 수는 4.4명이었다.

자원봉사자는 연인원 3,479명으로 일 평균 9.5명, 일평균 자원봉사자 1인당 입소자 수는 5명 수준이었으며 연간후원수입은 후원자 94명에 39,712천원으로 연간 예산의 5.65%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18] 병 양로원 기본사항(2009. 5. 31 현재)

구분		내용
시설	소재지	경기 ○○시 ○○동 543 번지
	규모	대지 2,347㎡, 건물연면적 1,366㎡(지하1, 지상2층)
입소인원	정원	50명
	현원	48명(남 15명, 여 33명) ; 정원 충족률 96%
2009년 예산	연간 예산	703백만원(보조금 471, 기타 232)
	입소자 1인당 예산	14,642천원
직원	전체 직원	11명(사회복지사 2명, 간호사 1명, 요양보호사 4명, 영양사1명, 조리원1명, 위생원 1명, 사무국장 1명)
	직원 1인당 입소자수	4.4명
자원봉사자	연인원	3479명
	일평균 자원봉사자	9.5명
후원금		39,712천원 (전체 예산 중 5.65%)

본 양로원은 사회복지법인 ○○재단에서 1989년 설립하여 양로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같은 장소에 노인전문요양원을 신축 개원(정원 60명)하였고, 2005년에는 위 요양원을 증축(정원 85명)하여 양로원과 상호연계운영하고 있었다.

입소노인 48명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가 44명이었으며, 유료실비입소자가 4명이었다.

나. 주요 조사내용 및 실태

1) 시설·환경 측면

(가) 시설의 접근성

본 시설은 ○○부 시내 2차선 도로에 접하고 있고 주변에 아파트단지, 롯데마트, KT지점 등이 위치하고 있어 시설의 접근성이 우수한 편이다.

(나) 외부환경

건물외관은 비교적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고 양로원 앞마당에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정원을 가꾸어놓아 입소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었고, 건물 뒷편에는 여러 가지 채소를 심어 원예실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림31〉 건물외관



〈그림 32〉 앞마당 휴게공간

(다) 내부환경

실내휴게실, 식당, 화장실, 목욕탕 등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었고 특히 거실에서 휴게실로 가는 복도에 그림과 화분을 비치하여 노인들의 정서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었으나, 입소노인 4~5명이 생활하는 11개의 거실(6개 20㎡, 5개 22㎡) 중 202, 206,

207, 213호실 등 4개의 거실에는 5명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어, 1인당 거실공간이 법정기준(5m²)에 미달하였고, 거실내부가 다소 어두워 보여 식당, 휴게 공간 등 다른 장소와 거실의 조도를 측정·비교해본 바,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거실내부에 보일러관 등이 노출되어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그림 33〉 거실과 휴게실 이동복도



〈그림 34〉 거실내부

(라) 시설·설비

공용식당은 1층에 별도로 시설되어 64명이 동시이용이 가능하였고, 화장실 11개소와 공용목욕탕 1개소는 청결한 상태였고 바닥이 미끄럼방지 타일로 시공되어 있었으며 또한 화장실과 목욕탕 등 12개소에 비상벨을 모두 설치해놓았고 거실복도에는 인터폰을 설치해놓는 등 위급시 호출장치를 잘 갖추어놓았다, 다만 공용화장실일부에 남·여 구분표시가 없어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그림 35〉 1층 공용식당



〈그림 36〉 화장실 비상벨

(마) 위생상태

매년 ○○시에서 정기적으로 위생점검을 하고 있고, 식품보관장소가 위생적이었으며, 주방시설이 깨끗해보였으며, 주 1회 자체 위생점검을 하고 있었으며,

2009. 4. 28. 대행업체를 통한 수질시험성적은 양호하였다.

(바) 안전관리

2009. 6. 22. 소방점검과 6. 23. 전기설비점검이 있었고, 직원 및 입소자들을 상대로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요령 및 소화기사용법 등 소방훈련을 년 2회 소방서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었고, 낙상예방을 위한 교육은 간호사가 분기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식당, 복도 등 화재취약지에 소화기 20대가 비치되어 있고 식당, 목욕탕 등 각 층에 투척용소화기 6세트가 설치되어있었으며, 1, 2층간에 자동 비상탈출대(미끄럼틀)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림 37〉 복도 소화기



〈그림 38〉 1~2층간 자동 비상탈출대

2) 관리 측면

(가) 직원기준 등 일반적인 관리실태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1급이며, 사회복지사 1명 이외에 간호사 1명, 요양보호사 4명, 영양사 1명, 조리원 1명, 위생원 1명 등 11명이 근무하고 있어 노인양로시설 입소자 48명에 필요한 인력 기준 11명이 충족되었다. 본 양로시설은 바로 옆 건물에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요양시설과 협력관계를 맺은 병원의 의사가 본 양로시설의 촉탁의로 활동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 거주노인의 혈압체크,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 또 시설 내에 간호사 1인이 상근함으로써 양로시설 입소자 50명당 1인 이상의 간호사가 근무하여야 하는 규정에 적합하다 할 수 있으나 입소자의 특성이 70세가 넘고, 또 하나 이상의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간호사가 근무하지 않는 근무시간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건강담당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할 수 있다. 그 외 인력은 위생원 1인이 근무하고 있었고, 조리원은 현재 1인이 근무함으로써 노인복지법

에 명시된 조리원 2명의 기준에 미흡하다 할 수 있다.

직원들은 11명으로 2교대 근무를 통해 원활하게 주·야간 교대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저녁반의 경우 1인 만이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시설의 안전과 건강을 담당하고 있었고, 그 시간 중에 3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으므로 시설 내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인력으로는 적다고 판단된다.

(나) 거주노인 등에 대한 기록의 충실성 등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있었으나, 동일 재단내 운영하고 있는 요양시설과 혼재하여 관리되고 있음으로서 시설 평가를 위한 기록체계로는 부적절하다 할 수 있다. 또 입소자의 상담내용이 매우 잘 기록되어 있었으나 월 1회의 기록에는 훨씬 못 미침으로서 상담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평가하기 어려웠다. 또한 IADL의 판정과 기록은 충실하였으나 1년에 1번만 평가되고 있었고, 또 그 판정을 통해 입소자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추후의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시설입소자는 남·녀 각각 분리되어 거주하고 있었고,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방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 시설은 양로시설이므로 건강상태를 대비한 격리실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필요시 요양시설의 격리실을 활용한다는 직원의 진술이 있었다.

(다) 직원교육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부 교육이 실시되고 있었고, 또 직원들의 외부교육을 장려함으로써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정보와 지식획득에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교육에 대한 기록 방식이 원칙이 없어 기록을 통한 직원내 공유나 전달교육의 활용은 미흡하다 할 수 있다.

(라) 의사결정 참여

입소노인들의 의사결정 참여는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직원의 진술이 있었다. 또 민원함이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 5건의 민원제기가 있어 민원을 수집하기 위한 시설의 노력은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었다. 또한, 매년 12월말에 자체적으로 거주노인의 보호자와 거주노인, 자원봉사자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수렴 및 시설

만족도 조사와 평가를 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3) 서비스 질 측면

(가) 식단의 작성 및 공고

영양사에 의해 매주 식단표가 작성되어 잘 보이는 곳에 게시되어 있으나, 거주노인들의 기호나 선호도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시행한 바 없고, 대부분의 노인들이 고혈압 또는 당뇨가 있고 당뇨병 환자의 경우 치료약물 못지않게 식단의 영향도 중요하나 이들의 식사요법을 위한 별도의 식단을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치료목표 혈압 또는 치료목표 혈당 수준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간호팀이 확인하고, 투약과 식단 조절, 신체활동, 체중조절 등을 통해 치료목표 혈압 또는 치료목표 혈당 수준 이하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적절한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식단 개발이 필요하였다.

(나) 치매노인 예방과 치료보호

사회복지사 1인이 치매인력양성교육을 이수하였고, 양로시설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문요양원, 지역 내 협력기관(○○병원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관할 보건소, ○○성모병원과 연계하여 MMSE검사, 신경심리검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 이외에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치매 예방 프로그램은 없었다. 입소자의 치매 여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 치매노인의 치매 악화 예방을 위해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치매 노인 및 다른 입소 노인들에게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19] 거주노인 질환별 현황

질환명	합계	치매	뇌졸중	고혈압	파킨슨	기타
인원	45명	5	1	25	1	13

(다) 적절한 의료서비스 및 상담서비스 제공

거주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을 위한 건강검진(종합검진)은 년 1회 ○○병원에서 출장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 1회 고혈압 환자의 혈압 및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측정하고 있었고, 영양보호사와 간호사가 복약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나, 거주노

인의 건강상태 및 투약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았으며,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만 보호자에게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알려주고 있었다.

거동이 가능한 거주노인은 양로시설 인근 공원, 산책로 등을 이용하여 적절한 신체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고, 자체 물리치료실은 없었으나 동일한 시설 구역 내에 있는 전문요양원 내 물리치료실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림 39〉 의료실

(라) 거주 노인의 의류 및 침구류 청결 상태

세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세탁하고 있어 노인들의 의류 상태가 대부분 양호하였고, 침구류는 대부분 깨끗하게 정리 정돈되어 사용하고 있었다.

(마) 간식 제공의 적절성

간식은 매일 오후 3시에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었고, 노인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바) 자치 활동 운영 여부

노인들에 의한 자치 활동에 관한 기록이 없었으며, 가끔 한방에 생활하는 노인들끼리 회의를 하는 정도였다. 노인의 자치활동은 담당 종사자의 전문적 개입으로 프로그램과 연결시켜 노인들 간의 상호 의견 교류, 친선 도모, 공동생활에의 적응, 시설 운영의 이해를 위해 시설 운영의 가용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 야외활동

약수터, 공원, 수목원 등 외출 가능한 노인들을 상대로 연 10회 산책나들이를 하고 있었고, 분기마다 시장이나 마트 등을 쇼핑하면서 물건을 구입하는 장터나들이도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건강이 양호한 노인은 주변 산에 등산을 하는 등 야외활동이 자유로운 편이었다.

(아) 외출이나 외박에 대한 배려

원할 경우 종사자와 상담하여 건강상태나 가족의 동의를 고려하여 수시로 외출이나 외박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외출 외박에 관련된 일지나 기록은 없었다.

(자) 자원봉사자, 후원자의 활동

자원봉사자는 1,019명(단체 24개)이 등록되어 있고 오리엔테이션, 신규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연 1회 자원봉사자의 날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참여자가 40여명으로 저조하였다. 후원자는 94명(단체 32개)이 등록되어 있었으며, 이메일, 소식지, 연하장 등을 발송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4)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가) 종교활동 강요 및 참여여부 결정 관련

종교에 대한 강요는 없으며, 천주교의 경우 월 1회 신부님이 본 시설을 방문하여 천주교를 믿는 노인을 상대로 종교 활동을 하며, 기독교를 믿는 노인들은 인근에 있는 교회에 함께 다녀오나, 불교를 믿는 노인의 경우에는 아무런 배려 및 조치가 없어서 종교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 개인 통장 관리 관련

현재 거주노인의 통장관리는 거주노인 48명 중 4명은 각자 보관하고 있으나, 44명은 사무실에서 일괄보관하고 있는 상태였다. 노인들의 건강상태에 따른 인지력 부족, 관리 소홀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고려, 시설에서 보관할 수밖에 없다는 시설장의 의견이었으나, 개인의 자율권과 관련하여 개개인의 통장을 노인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다) 프로그램 관련

본 시설에서는 거주노인들을 상대로 미술치료, 요리프로그램, 수지침 등 18종류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 월,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노인별로 작품모음집 바인더를 만들어 관리하는 등 관련분야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사가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었다.

(라) 인권위 진정함 설치

거주노인들이 자주 모여 휴식을 취하는 2층 휴게실내에 인권위 진정함 및 안내문을 설치하고 용지 및 필기도구도 비치되어 있었으나, 대부분의 거주노인들은 인권위 진정절차를 모르고 있었다. 향후 노인들이 참여하는 간담회시에 인권위 진정절차에 관한 안내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림40〉 2층 휴게실내 설치된 진정함

(마) 기부금(후원금) 운영 관련

연간후원금은 39,712,110원, 후원단체 32개, 후원자 94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후원물품 수입 및 사용내역이 일별로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5) 신체의 자유 침해 관련

거주노인들을 상대로 강제노동행위는 없었으며, 보호실 또는 격리실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노인학대는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남자노인 2명이 욕설이나 여성노인 목욕 훔쳐보기 등을 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당하여 벌금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 젊은 양로원 직원이 오히려 노인들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곤란한 경우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시설 측에서 입소노인들의 소일거리로 봉투붙이기 등을 해보았으나 실효성이 없었다는 원장의 진술이 있었고, 개별적으로 채소다듬기나 쓰레기 정리, 인근 부녀복지관에 다니는 노인이 있는 등 일반적인 행동이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 침해 여부

전화사용, 편지이용, 면회, 시설외부출입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면담과정에서 대부분의 노인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IV. 결론(제안)

1. 개선사항

가. 갑 요양원

1) 시설 측면

- 비상구나 안내판 등의 글씨를 거주노인들도 잘 볼 수 있게 크게 할 필요가 있다.
- 2층 복도 핸드레일 동선 중간에 배치된 가구는 노인 동선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
- 각 층 복도 등에 설치된 CCTV는 누구나 설치사실을 알 수 있게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고지할 필요가 있다.
- 4인 1실에 각 설치된 화장실의 냄새 억제방안(방향제 등)이 필요해 보였다.
- 2, 3층에 설치된 경사 강하식 구조대는 비상시 거주노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노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시설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관리운영 측면

- 현 시설운영위원회는 요양시설 비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관련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해보였다.
- 현재 거주노인들에 대한 입소초기 상담기록만 있으므로, 월 1회 정도 정기적 상담 후 기록할 필요가 있고, 담당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별 특이사항 등을 주 3회 정도 기록·관리하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3) 서비스 측면

- 자원봉사자 활동과 관련하여, 시설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규모로 관리하고, 역할은 보조업무에 국한하며, 특정일(토요일)에 몰리는 봉사시간을 가중치를 부여하여 일요일로 배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몸이 불편해도 정신적으로 정상인 노인을 대상으로 별도 프로그램운영을 개

발하는 등 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

- 시설내에서 종교활동 참여는 기독교만 가능한데, 다양한 종교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축탁의사순회에 대한 노인들의 만족도가 낮으므로, 인근 한의원과의 연계하는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 활용도가 낮은 공용목욕탕을 항상 개방하여, 거주노인이 원할 때 수시로 목욕을 실시하고, 특이행동 시에는 반드시 기록하여 사후 사고 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나. 을 요양원

1) 시설 측면

- 거주노인 4~3명이 생활하는 12개의 거실 중 3명이 생활하는 5개는 13.5㎡, 4명이 생활하는 1개는 16.5㎡로 1인당 침실기준 면적 5㎡¹⁶⁾에 미달하였다. 따라서침실기준면적의 개선이 필요하다.
- 화장실, 식당주방 내 콘센트를 덮개가 있는 것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 일부 방에만 설치된 핸드레일을 전체 방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 치매노인거실(관음실)내 군데군데 훼손된 장판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
- 외상·치매거실, 화장실, 목욕탕에 조속히 비상호출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 2층 남·여 공용화장실에 방향제, 핸드드라이가 없으며, 남자화장실에는 세면대조차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식당주방 내 잔반통은 덮개가 있는 것으로 교체하고, 주방기구(수저, 칼) 보관상태를 개선하는 등 식당주방시설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시설 내에 설치된 CCTV는 누구나 설치사실을 알 수 있게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고지할 필요가 있다.

2) 관리운영 측면

- 입소자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무국장 1인을 두어야 하므로 공석인 사무국장의 결원을 해소하여야 한다.

16) 2008. 1. 28. 규칙의 개정으로 1인당 침실기준 면적이 5㎡에서 6.6㎡로 증가되었으나,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 유예되었다.

- 물리치료실 공간협소하고 장비가 노후하므로, 신체활동과 물리치료장비를 보강하기 위한 런닝머신, 메트리스, 벨트, 자전거 등 기본적인 실내운동기구의 비치 필요하다.
- 각 어르신별 특이사항 등 주 3회 정도의 기록유지를 위해 영양보호사의 교육이 필요하다.
- 단순한 안부 인사를 벗어나 각 어르신별로 월 1회 30분 이상 정기적인 상담 후 기록유지가 필요하다.
- 단체급식시간에는 식당 조리원들에게 위생모자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어르신별 용돈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정기적으로 수입 지출상태 고지 필요, 개인별 체크카드 사용방안, 노인 방에 통장을 비치하여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관리방안 등).

3) 서비스 측면

- 치매노인의 신체활동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간호사교육, 보건소 연계 등을 통해 치매노인을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야외신체활동, 근력유지, 일광 등 적극적이고 흥미있는 참여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진료기록지의 처방에 변화가 없으므로,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통증·기능상태 확인하여 기록을 유지(5일 단위 정기적 체크)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 협력병원 처방에 변화가 없으므로, 통증 등에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고 법인 병원의 진료과목이 제한적이므로 여타 병원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1년에 4차례 정도 방문치료가 필요하다.
- 시설 내 불당이 있는 등 불교신도들에게는 종교 활동여건이 좋으나, 타 종교 활동을 위한 지원이 없으므로, 외부종교 활동을 위한 차량지원 등 새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 직원 사무실 앞에 설치된 인권위 진정함은 자유로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 이불 등 침구류 세탁의 청결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 병 양로원

1) 시설 측면

- 거주노인 4~5명이 생활하는 11개의 거실 중 6개는 20m², 5개는 22m²으로, 이 중 4개의 거실은 한방에 5명이 생활하여 1인당 침실 기준면적이 5m²에 미달하고, 합숙침실의 정원 4명을 초과하였다. 따라서 침실기준면적의 개선 또는 정원의 조정이 필요하다.
- 조도가 낮으며, 거실내부에 보일러관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 남·여 구분표시가 없는 공용화장실에는 구분표시를 하거나 시설여건상 같이 사용해야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부착할 필요가 있다.
- 2층 휴게실에 운동기구 일부가 비치되어 있으나 노인복지법상의 체력단련실을 대체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시설개선이 요구된다.

2) 관리운영 측면

- 어르신별 통장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개인별 체크카드 사용방안, 노인 방에 통장을 비치하여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관리방안 등)가 있다.

3) 서비스 측면

-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거주노인들의 경우 약물치료 못지 않게 식단의 영향이 중요하므로 이들의 식사요법을 위한 별도의 식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기존 치매노인 및 다른 노인들의 치매예방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

2. 검토의견

가. 적용법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나. 권고내용

1) ○○시장에게 을 요양원 입소자 1명 당 침실면적 및 사무국장의 배치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위반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고,

2) △△시장에게 병 양로원 입소자 1명 당 침실면적, 침실당 합숙인원 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위반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함.

3) 갑 요양원장, 을 요양원장 및 병 양로원장에게 개선사항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함.

다. 권고이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에 따라 개선사항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설의 감독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나머지 개선 사항은 노인복지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시정하도록 권고함.

※ 붙임 : 부록

보고자 : 침해조사과 조사관 ○○○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제 목 노인복지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주 문

1. ○○시장에게

乙 요양원의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 및 사무국장 배치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위반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2. △△시장에게

丙 양로원의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 및 침실 일실의 합숙인원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위반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甲 요양원장에게

가. 시설 측면에 부착된 비상구 표시등 안내문구 글씨를 크게 하고, 노인의 동선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2층 복도 핸드레일 중간에 배치된 가구를 정리하고, 각 층에 설치된 CCTV에 CCTV 설치 목적을 알 수 있는 안내문을 부착하며, 4인 1

실의 화장실 냄새를 제거하고, 2층 및 3층에 설치된 경사 강하식 구조대를 거주 노인들의 편의성을 고려한 구조시설로 개선할 것과,

나. 시설운영위원회에 요양시설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노인들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하여 이를 충실히 기록·관리할 것과,

다. 거주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다양한 종교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인근 병·의원과의 연계를 통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용목욕탕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4. 乙 요양원장에게

가. 화장실 및 식당주방 내에 설치된 콘센트를 덮개가 있는 콘센트로 교체하고, 일부 방에만 설치된 핸드레일을 모든 방에 설치하며, 관음실 장판을 교체하고, 외상·치매거실, 화장실, 목욕탕에 비상호출 장치를 설치하며, 남자화장실에 세면대를 설치하고, 식당주방 잔반통을 덮개 있는 잔반통으로 교체하고 주방조리기구의 보관 방법을 개선하는 등 노후화된 주방시설을 개선하고, CCTV에 CCTV 설치 목적을 알 수 있는 안내문을 부착할 것과,

나. 물리치료실 공간이 협소하고 장비가 노후하므로 이를 개선하거나 보강하고, 요양보호사들이 노인별 특이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단체급식시간에는 식당 조리원들에게 위생모자를 착용하도록 하고, 노인별 용돈관리에 있어 자신의 통장에 수입·지출 및 잔고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할 것과,

다. 치매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료·처방에 따른 변화된 결과를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협력병원을 추가로 확보하며, 불교 외 타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장소를 노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변경하고, 이불 등 침구류 세탁의 청결상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5. 丙 양로원장에게

가. 실내 조도가 낮으므로 조도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거실내부에 보일러관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남·여 구분표시가 없는 공용화장실에 구분표시 또는 공용화장실임을 알 수 있는 안내표시를 하고, 2층 휴게실은 체력단련실로 대체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시설을 개선할 것과,

나. 노인별 통장관리에 있어 자신의 통장에 수입·지출 및 잔고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할 것과,

다. 고혈압 또는 당뇨병이 있는 노인을 위해 별도의 식단을 제공할 것과, 치매예방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를 권고한다.

이 유

1. 방문조사의 배경 및 조사대상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이 확대되고 있으나 시설에 거주하는 있는 노인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아직 미미한 상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각 시설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맞게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여 시설 거주노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방문조사는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중 수용인원, 조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경기지역 요양시설 2개소와 양로시설 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3. 판단근거 및 기준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34조 제1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제34조 제4항)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구체적 실현으로 「노인복지법」을 제정(1997. 8. 22. 전면 개정, 법률 제5359호, 2007. 8. 3. 개정, 법률 제8608호, 2008. 4. 4. 시행)하였다. 방문조사 대상인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 입소절차, 운영기준,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등의 구체적 기준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2008. 1. 28. 보건복지가족부령 제437호, 다만 부칙에 따라 침실면적 등은 개정되기 이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제시하고 있다.

가. 양로시설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양로시설의 시설기준은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을 확보하여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한다(다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5.5.㎡이다).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4. 조사결과 및 판단

가. 甲 요양원

1) 시설·환경 측면

가) 시설의 접근성

본 시설은 ○○시내에 위치해 있으며 2차선 도로에 접하고 있다. 주변에 ○○도 교육청, ○○보훈지청, ○○교육원 등이 위치하고 있어 시설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나) 외부환경

건물 외관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건물 1층 및 2층에 정원이 있고(중앙정원, 치유정원) 3층 옥상에는 잔디와 등나무 벤치, 나무산책로 등이 갖추어진 옥상정원이 있다. 또한 야외산책로 등을 갖추고 있어 입소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다) 내부환경

각 거실마다 화장실이 있고 복도, 거실 등 필요한 곳에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층에 장애인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어 거주노인들이 이동에 불편함이 느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거실 등 실내공간이 넓고 채광이 잘 되어 쾌적하며, 전반적으로 환기가 잘 되고 실내온도와 조도도 양호한 편이었다. 노인들이 생활하는 거실은 모두 침대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4인용 48실, 1인용 8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침대마다 비상호출기가 설치되어 있어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었고, 1인당 침실 공간의 면적은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거주실 내 개인별 수납장이 구비되어 있었다.

라) 시설·설비

지하에 직원식당이 있었고, 노인들의 식사는 노인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각방 침실에서 식사를 하거나 각 층 휴게공간을 식당으로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거실 내 화장실 및 공용화장실은 모두 양변기 형태로 설치되어 있고 비교적 청결한 상태였으나 거실 내 화장실에서는 약간 불쾌한 냄새가 났다.

목욕을 할 경우에는 몸이 불편하신 노인은 목욕기계가 설치된 목욕탕을 이용하고, 이동이 양호한 노인은 주로 거실 내 화장실을 목욕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공용목욕탕 1개소가 있었으나 방문조사 당시 문이 잠겨있는 등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각 층 복도에는 휴게실과 프로그램실 겸용 공간이 있어 거주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가족면회실, 상담실이 잘 갖추어져 있었고, 2층에는 물리치료실과 작업치료실을 갖추고 있는 등 필요한 시설들을 잘 갖추어 있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었다. 다만, 각층 비상구 표시등 안내 문구를 노인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크게 할 필요가 있었다.

마) 위생상태

식기소독은 매일 하고 있었고, 주방 및 식품보관 장소는 모두 최신시설이라 위생적이었다. 영양사 2명과 조리원 11명은 모두 외주업체(○○푸드스트) 소속이며, 이들에 대한 위생교육 등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바) 안전관리

스프링쿨러, 급수전, 소화기 등 소방법상의 시설물들이 적절히 설치되어 있었고, 대피훈련 및 안전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2층 및 3층에 설치된 경사강하식 구조대는 노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일반적인 비상구조 장비이므로 비상사태발생시 노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요양보호사에게만 실시하고 있는 낙상예방을 위한 교육도 거주노인과 다른 직원들에게도 확대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관리 측면

가) 직원기준 등 일반적인 관리실태

직원수는 총 130명으로 요양원 직원이 총 33명(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시설장,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 4명, 촉탁의 1명, 간호사 10명, 간호조무사 2명, 물리치료사 3명, 작업치료사 1명, 사무원 6명, 관리인 5명)이고 외주업체용역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직원이 97명(요양보호사 80명, 영양사 및 조리원 13명, 위생원 4명)으로 법정 직원수(122명)보다 8명이 더 많았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숫자가 많아 요양원 측에서 이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6인으로 구성된 시설운영위원회에 복지시설운영전문가의 참여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기록관리 등

거주노인들에 대한 상담기록은 입소 초기 상담기록만 있고 월 1회 이상의 빈도로 기록되고 있지는 않았으나 의사 및 간호사, 사회복지사에 의한 진료나 상담내용은 비교적 충실하게 기록되고 있었다. 거주노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주 3회 노인별 특이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ADL¹⁷⁾ 또는 IADL 등 입소자의 기능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작업치료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고, 거주노인들의 갑작스런 시각장애, 식사거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직원들 간 사례회의가 3개월마다 시행되고 있었다.

다) 직원교육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비주기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하나,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관련 기록은 없었다. 요양시설의 특성에 맞게 안전과 건강, 노인의 삶의 질, 인간존엄과 관련된 직원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실시될 필요가 있다.

라) 의사결정 참여

노인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구나 방안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노인들이 평시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인 각층 엘리베이터 옆에 의견수렴함이 비치되어 있었다. 각 층 휴게실 등 노인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의견수렴함을 추가로 설치하고, 의견수렴함의 기능과 위치를 거주노인 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서비스 질 측면

가) 식단의 작성 및 공고

식단은 영양사에 의해 작성되어 게시판에 공고되고 있었으나, 노인들의 기호나 선호도 파악을 위한 조사는 시행한 바 없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일반 식단 염분량의 2/3 수준으로 제공하고, 당뇨병 환자의 경우 식단의 총열량, 탄수화물 비중을 조절하여 제공하는 등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식사요법을 시행하고 있었다.

17)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일상생활활동 활동측정, 옷 양치, 목욕 등을 혼자 할 수 있는지 측정) IADL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손톱, 화장, 면도, 청소 등을 혼자 할 수 있는지 여부 측정)

나) 의료서비스 및 상담서비스

노인 196명 중 치매환자는 97명(49.5%)이며, 노인의 인지기능, 신체기능, 정서적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2009년 하반기부터 별도의 치매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간호사 인력 중 치매 전문 교육 이수자가 1명 있었다. 입소자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건강검진(종합검진)은 '08년 1회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검진기록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염병 발생을 대비하여 감염관리지침서를 관리하고 있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일 1회(필요시 수시), 당뇨병 환자의 경우 주 1회(상태별로 일 2회) 혈당측정을 하고, 시설의 촉탁의가 하루 2회 회진을 실시하고 있다. 인근에 있는 동수원병원과 협약을 맺고 있으며 보호자가 원하는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다만, 요양원 내 종사자에게 노인들의 건강문제, 정서적 문제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별도의 요양서비스 관련 외부 전문 교육훈련 참여를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인력의 전문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거주 노인의 의류 및 침구류 청결 상태

각 층에 세탁물 보관소가 있으며 외부용역업체 위생원 4명이 세탁물을 관리하고 있다. 세탁물이 있는 경우 수시로 세탁을 하고 있어 노인들의 의류와 침구류 상태가 대부분 깨끗하게 정리·정돈되어 있었다.

라) 간식 제공의 적절성

간식은 매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었고, 일부 후원 식품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균형 있는 영양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마) 자치 활동 운영 여부

노인들이 자치활동을 했다는 기록은 없었으며, 시설 관계자는 노인들의 자치조직 활동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노인들의 자치활동은 담당 종사자의 전문적 개입으로 프로그램과 연결시켜 노인들 간의 상호의견 교류와 친선도모, 공동생활 적응, 시설 운영의 이해를 위한 가용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바) 야외활동

노인들은 주로 시설내부 1층의 치유정원과 2층 및 3층의 정원을 오가며 일광시간을 갖고 있었고, 연간 행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봄철에 미니나들이를 하고 있었다. 노인들의 특성에 맞는 계획적인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 외출이나 외박에 대한 배려

시설 관계자는 노인들이 원할 경우 건강상태 및 가족의 동의 등을 고려한 후 종사자와의 상담을 통해 수시로 외출·외박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나, 외출·외박과 관련된 일지 및 기록은 없다.

4)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 종교활동 강요 및 참여여부 결정 관련

종교활동에 대한 강요는 없으나 노인들에게 가능한 종교활동은 기독교 뿐이므로 다양한 종교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종교활동을 위한 이동차량이나 종교 활동장소 제공 등 시설 측의 배려 및 조치가 없다.

나) 개인 통장 관리 관련

주로 보호자가 있는 시설의 특성상, 시설 측에서 노인의 개인통장을 관리하거나 개인의 재산에 관여하지는 않고 있다.

다) 프로그램 관련

본 시설에서의 활동프로그램으로는 재활프로그램 6종(원예치료, 치료 레크레이션, 미술치료, 인지치료, 실버요가, 기공체조)과 정서지원 프로그램 6종(음악치료, 독서치료, 영화감상, 웃음치료, 심리치료, 음식 만들기)이 주 1~2회 운영되고 있다.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각층 엘리베이터 옆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수렴함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각층 엘리베이터 옆은 노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다. 방문조사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공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함을 노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 기부금(후원금) 운영 관련

연간 후원금은 58,907천원이고 후원자는 50명이 등록되어 있다.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후원물품 수입 및 사용내역이 비교적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5) 신체의 자유 침해 관련

2009. 5. 12.~5. 14. 본 시설의 요양보호사들에 의한 노인학대문제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으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시설 측은 노인학대 관련 내용이 기사화된 이후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더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 침해 여부

전화사용, 편지이용, 면회, 시설외부출입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 각층 복도 등에 노인들의 사고예방 등을 위해 CCTV는 설치되어 있으나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안내문이 없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할 필요성이 있다.

나. 乙 노인요양원

1) 시설·환경 측면

가) 시설의 접근성

본 시설은 면소재지로부터 1.7Km 떨어진 산골에 위치하고 있어 택시 등 개인차량으로만 접근이 가능하다.

나) 외부환경

건물외관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고 주변 자연경관이 아주 좋다. 다만, 시설에서 100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에 있는 축사에서 악취가 나고 있어 시설 주변에 파리 등 해충이 비교적 많았다. 시설외부에 정자를 짓고 현관과 외부산책로를 연결하여 입소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었다.

다) 내부환경

실내(세탁실 및 식당 등)에 설치되어 있는 일부 전기콘센트가 덮개가 없이 노출되어 있어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최근 시설 내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하여 1층과 2층 간 계단이동은 금지하고 있었으며, 홀로 이동하는 노인의 경우 이동 경사로를 이용하여 층간 이동을 하고 있으나 이동거리가 멀어 다소 불편해 보였으며, 휠체어를 사용하는 노인(12명)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조직원이 함께하여 사고의 위험은 없어 보였다.

2~3명이 생활하는 12개의 침실과 주로 치매노인들이 생활하는 관음실, 외상노인들이 생활하는 보현실이 있다. 1층 및 2층의 3명이 생활하는 호실(102호, 103호, 105호, 206호, 208호)의 면적은 13.5㎡이고, 4명이 생활하는 208호실의 면적은 16.5㎡로 1인당 침실면적의 법정기준인 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라) 시설·설비

물리치료실 및 세탁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2층에 위치해 있는 프로그램실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고, 대형 TV와 피아노, 미니 당구대 등이 설치되어 있어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공용식당은 1층에 별도로 설치하여 40~50명의 거주노인들이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었다.

화장실과 목욕탕의 바닥은 미끄럼방지 타일로 시공되어 있었다. 1층 및 2층에 설치된 남·여 공용화장실 중 외부손님이 많이 이용하는 1층 화장실에는 방향제와 핸드드라이가 있었으나 입소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2층 화장실에는 방향제와 핸드드라이가 없었고, 2층 남자화장실에는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화장실과 목욕탕에 비상호출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노인들의 갑작스런 사고발생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였다.

마) 위생상태

2008년에 관할 구청에서 두 차례의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고, 시설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하고 있었으며, 식자재는 별도의 대형냉동 창고에 보관하는 등 청결한 위생상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식당주방 내 잔반통의 덮개가 없는 등 주방시설이 노후화되었고, 폐수저와 양념통이 주방 내 늘어져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해 보였다.

바) 안전관리

직원 및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요령 및 소화기 사용법, 낙상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식당 및 복도 등 화재취약지에 소화기 13대가 비치되어 있고 각층에는 투척용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었으며, 각 방에는 열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2층 및 3층 거주자를 위한 응급대피도구나 장치는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2) 관리 측면

가) 직원기준 등 일반적인 관리실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55명에 필요한 인력 기준 18명보다 3명이 더 많은 21명(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시설장,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각 1명, 물리치료사 1명, 요양보호사 12명, 영양사 1명, 조리원 2명, 위생원 1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총무 역할을 하는 사무국장 자리가 공석이었다.

지역사회 내 협력병원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전담의사나 촉탁의사가 없었다. 응급상황시 협력병원까지의 이동시간이 차량으로 10여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입소자의 건강문제에 있어 응급상황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직원들의 3교대 근무를 통해 주·야간 교대 근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매일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간호인력이 2명뿐이어서 3교대 근무시 시설 내에 건강전문가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훈련 및 응급조치 매뉴얼 제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직원의 전공특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기록관리 및 거주형태 등

의사 및 간호사, 사회복지사에 의한 진료나 상담내용이 월 1회 이상의 빈도로 기록되고 있지는 않았으나, 상담내용은 비교적 충실하게 기록되고 있었고, 투약 등에 대한 기록은 간호사에 의해 비교적 충실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케이스별로 자료를 기록하고 정리하고 있었으며, ADL 훈련을 매일 실시한 후 기록하고 있었으나 사례회의에 대한 기록은 충실하지 않았다.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남·여를 구분하여 숙소를 배정하고 있었으며, 집중적인 관

리가 필요한 노인은 관음실 등 별도의 격리거실에서 거주하도록 하고 있다. 격리거실에는 직원을 상주시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격리거실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 격리거실 문을 잠그고 있는데 잠금 조치보다는 다른 직원을 잠시 배치하는 등의 격리실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직원교육

정기교육 형태가 아닌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직원교육 중 50%는 성희롱 관련 교육이었다. 요양시설이라는 특성상 거주노인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노인의 삶의 질, 인간존엄과 관련된 직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의사결정 참여

민원함은 1층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노인들은 민원함의 위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입소할 때 민원함의 기능과 위치를 입주노인들에게 인지시켜 줄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서비스 질 측면

가) 식단의 작성 및 공고

식단은 게시판에 공고되며, 영양사가 작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인들의 기호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는 실시된 적이 없으며,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의 식사요법을 위한 별도의 식단은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나) 의료서비스 및 상담서비스

의료법인 ○○마을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촉탁의가 정기적으로 요양원을 방문하여 입소자에게 약물처방을 하고 있으며, 인근 협력병원(○○병원)을 통해 입원치료서비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입소자 55명 중 치매환자는 8명(14.5%)이며, 간호사 중 치매 전문교육 이수자가 1명 있었으나 별도의 치매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 치매예방센터에서 요양원을 방문하여 치매선별검사(MMSE)를 시행하고 있다. ○○도립병원에서 요양원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무료종합건강검진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검진시에 결핵 및 간기능 검사 등 특정 검진도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주 1회 또는 필요시 수시로 고혈

압 환자의 혈압 및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측정하고 있었으나, 만성질환자에게 투약 및 증상관리 등과 관련한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시행하고 있지 않았다.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가 치료목표 혈압 또는 치료목표 혈당 수준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투약과 식단 조절, 신체활동, 체중조절 등을 통해 치료목표 혈압 또는 치료목표 혈당 수준 이하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적절한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식단 개발이 필요하였다.

물리치료실 공간이 협소하고 물리치료 장비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의 신체 활동을 보조할 도우미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인들의 실내·외 신체활동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자원봉사자 및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을 확충하여 거주노인들에게 신체활동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 거주 노인의 의류 및 침구류 청결 상태

실내세탁장이 한 곳 있으며, 위생원 1명이 거주노인들의 세탁물을 관리하고 있다. 거주 노인들의 침구류 세탁상태 및 일광소독 상태 등이 매우 불량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간식 제공의 적절성

간식은 매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후원 식품을 사용하고는 있었으나 균형 있는 영양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마) 자치 활동 운영 여부

노인들에 의한 자치 활동과 관련된 기록은 없었다. 금년도에 거주노인 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으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생활규칙이나 공동생활준수사항과 같은 전달사항뿐이었고 노인들의 의견이나 요구사항과 관련된 기록은 없었다. 노인의 자치 활동은 담당 종사자의 전문적 개입으로 프로그램과 연결시켜 노인들 간의 상호 의견 교류, 친선 도모, 공동생활에의 적응, 시설 운영의 이해를 위해 시설 운영의 가용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바) 야외활동

거주노인들은 주로 시설 앞마당의 휴게정자를 오가며 운동과 휴식, 일광시간을 갖

고 있었다. 연간 행사계획에 따라 매년 2회 야외나들이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예산이 전혀 배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금년도에는 아직 야외나들이를 가지 못한 상태였다.

사) 외출이나 외박에 대한 배려

시설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고, 거주노인들이 보호자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외출·외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4)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침해 관련

가) 종교활동 강요 및 참여여부 결정 관련

2층에 법당이 있어 불교신자인 거주노인들은 법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불교 외 다른 종교 활동을 위한 배려나 여건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불교 외 다른 종교를 믿는 노인들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차량지원 등 세심한 배려 및 조치가 필요하였다.

나) 개인 통장 관리 관련

사무실에서 노인들의 통장을 일괄 관리하고 있어 노인들은 자신의 통장의 수입 및 지출 잔고 현황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통장에 있는 돈이 자신의 재산이라는 권리 의식이 부족하였다.

시설 측에서는 노인들이 통장잔고를 물어보면 알려주고 있고 사전 동의를 받아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통장은 개인재산이므로 스스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프로그램 관련

활동프로그램으로 건강치료서비스 2종(수지침, 생활체조 등), 정서지원 서비스 7종(레크리에이션, 나들이, 생신잔치, 어르신간담회, 영화감상, 효도관광, 공연관람 등), 기능회복서비스 8종(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시장보기, ADL훈련, IADL훈련, 산책, 인지교실 등)이 부정기적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다만 나들이, 효도관광, 공연관람은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

1층 사무실 바로 앞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이 설치되어 있어 거주 노인들이 진

정함을 이용할 경우 직원들에게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거주 노인들은 진정함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방문조사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인권위 진정함 및 안내문을 요양원에 제공함에 따라 현재는 노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 기부금(후원금) 운영 관련

후원자 24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연간후원금은 17,246천원이다.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후원물품 수입 및 사용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5) 신체의 자유 침해 관련

거주노인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킨 사실이 없으며, 보호실 또는 격리실은 운영하고 있지 않다. 노인학대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 침해 여부

전화사용, 편지이용, 면회, 시설외부출입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 각종 복도 등에 노인들의 사고예방 등을 목적으로 6대의 CCTV가 설치되었으나 노인들은 설치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안내문이 없었다. 누구나 CCTV 설치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고지할 필요성이 있다.

시설의 지리적인 여건이나 운영, 대외관계 등을 볼 때 시설이 폐쇄적이라는 판단되므로 향후 시설을 외부에 개방하고 접근성을 높여(인터넷, 행사 등을 적극 활용) 외부 기관과의 네트워킹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丙 양로원

1) 시설·환경 측면

가) 시설의 접근성

본 시설은 ○○ 시내의 2차선 도로에 접해 있고 주변에 아파트단지, 롯데마트, KT 지점 등이 위치하고 있어 시설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나) 외부환경

건물 외관은 비교적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 양로원 앞마당에 휴게공간과 정원이

있어 입소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건물 뒤 공간에는 여러 가지 채소를 심어 원예실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다) 내부환경

실내휴게실, 식당, 화장실, 목욕탕 등의 내부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었고, 특히 거실에서 휴게실로 가는 복도에 그림과 화분을 비치하여 노인들의 정서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노인 4~5명이 생활하는 거실면적은 11개의 거실 중 6개가 20㎡이고 5개는 22㎡이었다. 4개의 거실(202호실, 206호실, 207호실, 213호실)에는 5명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어 1인당 침실공간이 법정기준인 5㎡에 미달하였다.

식당, 휴게 공간 등 다른 장소와 거실의 조도를 측정·비교해본 결과 거실내부가 다소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실내부에 보일러관 등이 노출되어 있었다.

라) 시설·설비

공용식당은 1층에 별도로 있었으며, 64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화장실 11개소와 공용목욕탕 1개소는 청결한 상태였고 바닥이 미끄럼방지 타일로 시공되어 있었다. 화장실과 목욕탕 등 12개소에 비상벨이 모두 설치되어 있었고 거실 복도에는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는 등 위급상황을 위한 호출장치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 다만 공용화장실 일부에 남·여 구분표시가 없었다.

마) 위생상태

매년 ○○사에서 정기적으로 위생점검을 하고 있고, 주방시설이 깨끗하고 식품보관장소가 위생적이었다. 주 1회 자체 위생점검을 하고 있었으며, 2009. 4. 28. 대행업체를 통한 수질시험성적은 양호하였다.

바) 안전관리

2009. 6. 22. 소방점검과 6. 23. 전기설비점검이 있었고, 직원 및 입소자들을 상대로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요령 및 소화기사용법 등 소방훈련을 연 2회 소방서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간호사가 낙상예방을 위한 교육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었다. 식당, 복도 등 화재취약지에 소화기 20대가 비치되어 있고 식당, 목욕탕 등 각 층에 투척용소화기 6세트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1층과 2층간에 자동 비상탈출대(미끄럼틀)가

설치되어 있었다.

2) 관리 측면

가) 직원기준 등 일반적인 관리실태

11명의 직원(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시설장, 간호사 1명, 요양보호사 4명, 영양사 1명, 조리원 1명, 위생원 1명 등)이 근무하고 있어 노인양로시설 입소자 48명에 필요한 인력인 기준 11명이 충족되었다. 본 양로시설은 바로 옆 건물에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요양시설과 협력관계를 맺은 병원의 의사가 본 양로시설의 촉탁의로 활동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 거주노인의 혈압체크,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 또 시설 내에 간호사 1인이 상근하므로 양로시설 입소자 50명당 1인 이상의 간호사가 근무하여야 하는 규정에는 적합하다 할 수 있으나 입소노인들의 나이가 이 70세가 넘고, 하나 이상의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간호사가 근무하지 않는 근무시간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건강담당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할 수 있다. 그 외 인력은 위생원 1인이 근무하고 있었고, 조리원은 현재 1인이 근무하므로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조리원 2명의 기준에 미흡하다 할 수 있다.

직원들의 2교대 근무를 통해 원활하게 주·야간 교대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저녁반의 경우 한 명이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시설의 안전과 건강을 담당하고 있었고, 그 시간 중에 3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시설 내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나) 기록관리 거주형태 등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있었으나, 동일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요양시설과 혼재하여 관리되고 있어 시설 평가를 위한 기록체계로는 부적절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입소자의 상담내용이 매우 잘 기록되어 있었으나 월 1회의 기록에는 훨씬 못 미쳐 상담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평가하기 어려웠다. 또한 IADL의 판정과 기록은 충실하였으나 1년에 한 번만 평가되고 있었고, 또 그 판정을 통해 입소자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추후의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시설입소자는 남·여가 각각 분리되어 거주하고 있었고,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방을 배정하고 있었다. 본 시설은 양로시설이므로 건강상태를 대비한 격리실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필요시 요양시설의 격리실을 활용하고 있었다.

다) 직원교육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교육이 실시되고 있었고, 직원들에게 외부교육을 장려함으로써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정보와 지식획득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교육에 대한 기록 방식에 원칙이 없어 기록을 통한 직원내 공유나 전달교육의 활용은 미흡하다 할 수 있다.

라) 의사결정 참여

민원함이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 5건의 민원제기가 있는 등 민원을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매년 12월 말에 자체적으로 거주노인의 보호자와 거주노인, 자원봉사자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수렴 및 시설 만족도 조사와 평가를 하고 있었다.

3) 서비스 질 측면

가) 식단의 작성 및 공고

영양사가 매주 식단표를 작성하여 잘 보이는 곳에 게시되어 있으나, 거주노인들의 기호나 선호도 파악을 위한 조사는 시행한 적이 없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고혈압 또는 당뇨가 있고 당뇨병 환자의 경우 치료약물 못지않게 식단이 중요하나 이들의 식사요법을 위한 별도의 식단을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가 치료목표 혈압 또는 치료목표 혈당 수준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간호팀이 확인하고, 투약과 식단 조절, 신체활동, 체중조절 등을 통해 치료목표 혈압 또는 치료목표 혈당 수준 이하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적절한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식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나) 의료서비스 및 상담서비스

사회복지사 1인이 치매인력양성교육을 이수하였고, 양로시설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문요양원, 지역 내 협력기관(○○병원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관할 보건소, ○○병원과 연계하여 MMSE검사, 신경심리검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 이외 시설입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치매 예방 프로그램은 없었다. 입소자의 치매 여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 치매노인의 치매 악화 예방을 위해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치매

노인 및 다른 입소 노인들에게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주노인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건강검진(종합검진)은 연 1회 ○○병원에서 출장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 1회 고혈압 환자의 혈압 및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측정하고 있었다. 영양보호사와 간호사가 복약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나, 거주노인의 건강상태 및 투약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았으며,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만 보호자에게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알려주고 있었다.

거동이 가능한 거주노인은 양로시설 인근 공원, 산책로 등을 이용하여 적절한 신체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고, 자체 물리치료실은 없었으나 동일한 시설 구역 내에 있는 전문요양원 내 물리치료실을 이용하고 있었다.

다) 거주 노인의 의류 및 침구류 청결 상태

세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세탁하고 있어 노인들의 의류 상태가 대부분 양호하였으며, 침구류는 대부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라) 간식 제공의 적절성

간식은 매일 오후 3시에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었고, 노인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마) 자치 활동 운영 여부

노인들에 의한 자치 활동에 관한 기록이 없었으며, 가끔 한방에 생활하는 노인들끼리 회의를 하는 정도였다. 노인의 자치활동은 담당 종사자의 전문적 개입으로 프로그램과 연결시켜 노인들 간의 상호 의견 교류, 친선 도모, 공동생활에의 적응, 시설 운영의 이해를 위해 시설 운영의 가용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바) 야외활동

약수터, 공원, 수목원 등 외출 가능한 노인들을 상대로 연 10회 산책나들이를 하고 있었고, 분기마다 시장이나 마트 등을 쇼핑하면서 물건을 구입하는 장터나들이도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건강이 양호한 노인은 주변 산에서 등산을 하는 등 야외활동이 자유로운 편이었다.

사) 외출이나 외박에 대한 배려

원할 경우 종사자와 상담하여 건강상태나 가족의 동의를 고려하여 수시로 외출이나 외박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외출 외박에 관련된 일지나 기록은 없었다.

4)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가) 종교활동 강요 및 참여여부 결정 관련

종교에 대한 강요는 없으며, 천주교의 경우 월 1회 신부님이 본 시설을 방문하여 천주교를 믿는 노인을 상대로 종교 활동을 하며, 기독교를 믿는 노인들은 인근에 있는 교회에 함께 다녀오나, 불교를 믿는 노인의 경우에는 아무런 배려 및 조치가 없어서 종교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 개인 통장 관리 관련

현재 거주노인의 통장관리는 거주노인 48명 중 4명은 각자 보관하고 있으나, 44명은 사무실에서 일괄보관하고 있는 상태였다. 노인들의 건강상태에 따른 인지력 부족, 관리 소홀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고려, 시설에서 보관할 수밖에 없다는 시설장의 의견이었으나, 개인의 자율권과 관련하여 개개인의 통장을 노인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다) 프로그램 관련

본 시설에서는 거주노인들을 상대로 미술치료, 요리프로그램, 수지침 등 18종류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 월,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노인별로 작품모음집 바인더를 만들어 관리하는 등 관련분야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사가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었다.

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

노인들이 자주 모여 휴식을 취하는 2층 휴게실 내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및 안내문을 설치하고 용지 및 필기도구도 비치되어 있었으나, 대부분의 노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향후 노인들이 참여하는 간담회에서 인권위 진정절차에 관한 안내를 할 필요가 있었다.

마) 기부금(후원금) 운영 관련

연간후원금은 39,712,천원이며, 후원단체는 32개, 후원자는 94명이 등록되어 있다.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후원물품 수입 및 사용내역이 일별로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5) 신체의 자유 침해 관련

거주노인들을 상대로 한 강제노동행위 강요는 없었으며, 보호실 또는 격리실은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노인학대는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남자노인 2명이 욕설이나 여성노인이 목욕하는 것을 훔쳐보는 행위 등으로 인해 노인들 간의 다툼이 있었고, 노인들이 개별적으로 채소 다듬기영하쓰레기 정리, 인근 부녀복지관에 다니는 노인이 있는 등 일반적인 행동이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 침해 여부

면담과정에서 대부분의 노인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전화사용, 편지 이용, 면회, 시설외부출입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

5. 결론

국가인권위원회의 방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하여 관련 규정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09. 12. 1.

위원장 유 남 영

위원 윤 기 원

위원 최 윤 희



부 록

1. 설문결과
2. 인권평가지표 및 설문지
3. 노인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

1. 설문결과

○ 어르신의 학력

구분	갑	을	병	계
무	6	12	10	28 (45.2%)
초등	9	4	7	20 (32.2%)
중등	1	0	2	3 (4.8%)
고등	4	0	1	5 (8.1%)
대학	4	1	1	6 (9.7%)

○ 인권위 진정절차에 대한 설명 및 교육여부(어르신)

구분	갑	을	병	계
불만족	24 (100%)	17 (100%)	16 (76.2%)	57 (91.9%)
만족	0 (0%)	0 (0%)	5 (23.8%)	5 (8.1%)

○ 인권위 진정함 설치장소 인지 여부(어르신)

구분	갑	을	병	계
모른다	22 (91.7%)	17 (100%)	11 (52.4%)	50 (80.6%)
알고있다	2 (8.3%)	0 (0%)	10 (47.6%)	12 (19.4%)

○ 노인학대 상담번호를 알고 계십니까?(직원)

구분	갑	을	병	계
모른다	3 (87%)	5 (50%)	0 (0%)	8 (80.5%)
알고있다	20 (13%)	5 (50%)	8 (100%)	33 (19.5%)

○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가?(직원)

구분	갑	을	병	계
아니오	6 (26%)	2 (20%)	3 (33%)	11 (26.2%)
예	17 (74%)	8 (80%)	6 (67%)	31 (73.8%)

○ 최근 1년간 노인인권교육을 수강하였나?(직원)

구분	갑	을	병	계
없음	18 (78%)	6 (60%)	9 (100%)	33 (78.6%)
있음	5 (22%)	4 (40%)	0 (0%)	9 (21.4%)

○ 인권위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의향은?(직원)

구분	○○	용인	나눔의 샘	계
아니오	4 (17%)	1 (10%)	5 (62.5%)	10 (24.4%)
예	19 (83%)	9 (90%)	3 (37.5%)	31 (75.6%)

2. 인권평가지표 설문지

가. 시설환경측면 체크리스트

평가지표	내용	평가	비고
A1. 시설의 접근성은 어떠한가?	주요 공공교통수단(지하철, 버스)의 이용이 용이하거나 인근 주요 상업지역으로부터 15분 이내의 거리이다. 또는 공공 교통수단 이용 가능 지점까지 운영되는 자체 셔틀버스가 있다	탁월 (4)	
	2차적인 교통수단(시외버스, 마을버스)으로 이용 가능하며 인근 주요 상업지역으로부터 15분 이상-30분 이내의 거리이다	우수 (3)	
	2차적인 공공교통수단(시외버스, 마을버스)이 있으나 배차시간이 길고(1시간 이상) 인근 주요상업지역으로부터 30분-1시간 이내의 거리이다	보통 (2)	
	택시 등 개인차량으로만 접근 가능하거나 인근 주요 상업지역으로부터 매우 멀리(1시간 이상) 떨어져 있다	미흡 (1)	
해설(A1) : 해당 항목 1개만 기입(○표)			
A2. 외부환경	건물외관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		
	시설주위에 공해유발 시설이 없다		
	정원 및 원예치료 공간이 있으며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운동장, 산책로가 있으며 관리가 잘 되고 있다		
	탁월(4가지모두), 우수(3가지), 보통(1~2가지), 미흡(0개 해당)		
해설(A2이하) : 해당 항목 전부 기입(○표), 이하 동일			
A3. 내부환경 1 (안전상태)	실내의 위험요인(가스, 전기콘센트, 세제,약품 등)이 노인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탈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추락 등의 위험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필요한 곳에 핸드레일 및 바닥과 계단 등에 미끄럼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탁월(4가지모두), 우수(3가지), 보통(1~2가지), 미흡(0개 해당)		
A4. 내부환경 2 (이동)	시설이 단층으로 되어 있거나 복층에 휠체어 사용자가 거주하는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 또는 완만한 경사도가 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편리한 거주실이 있다(문폭,		

평 가 지 표	내 용	평 가	비 고
	침대주위 여유 공간 등)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공용공간(화장실, 목욕탕, 식당, 휴게실, 물리치료실)이 있다		
	시설의 1개 이상 출입구는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다		
	탁월(4가지모두), 우수(3가지), 보통 (1~2가지), 미흡(0개 해당)		
A5. 내부환경 3 (쾌적성)	거주실과 활동 공간에 채광이 잘 된다		
	환기가 잘 되고 있으며 불쾌한 냄새 없다		
	실내온도가 적당하다(냉난방기 작동여부)		
	실내의 조도가 적당히 유지된다(조명 밝기)		
	탁월(4가지모두), 우수(3가지), 보통 (1~2가지), 미흡(0개 해당)		
A6. 내부환경 4 (공간)	1인당 침실 공간의 면적이 적절하며 개개인을 위한 수납공간이 있다		
	물리치료 및 프로그램실이 사용노인의 수와 비교해 적절하다		
	목욕실, 화장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휴게실, 상담실, 면회실이 적절하게 확보되어 있다		
	탁월(4가지모두), 우수(3가지), 보통(1~2가지), 미흡(0개 해당)		
<p>해설 : 거실은 1인당 5.0제곱미터 이상, 합숙용거실의 경우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 물리치료실은 정원의 20% 정도의 인원이 사용할 경우 1인당 1평(100명 시설의 경우 20명×1평=20평) 정도가 적절하다. 프로그램실 및 휴게실은 전체 인원 1인당 0.5평 정도가 적절하나 전반적으로 너무 비좁지 않은가를 확인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직원 업무 공간은 사무실과 간호사실 등을 포함한다.</p>			
A7. 시설설비 1 (식당)	쾌적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휠체어 이용자의 사용이 가능하다		
	직원이 식사보조를 할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식사준비를 위한 주방공간이 적절히 확보되어 있으며 청결하다		
	탁월(4가지모두), 우수(3가지), 보통(1~2가지), 미흡(0개 해당)		
A8. 시설설비 2 (화장실)	거주노인들이 이용하기에 충분한 수이다		
	청결하며 냄새가 나지 않는다		
	미끄럼방지타일 등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장애노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다		

평 가 지 표	내 용	평 가	비 고
	탁월(4가지모두), 우수(3가지), 보통(1~2가지), 미흡(0개 해당)		
해설 : 거주노인 10인까지 1개 이상의 대변기 설치(매10인 초과시 1개 증설) 대변기수의 3분의 1이상은 좌식양변기로 설치			
A9. 시설설비 3 (목욕탕)	신체상태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목욕이 가능하다 (급탕 설치 여부)		
	목욕실의 크기가 사용자나 기구와 비교하여 적절하다		
	바닥이 미끄럽지 않게 잘 처리되어 있다		
	위급시 필요한 호출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다		
	직원이 목욕을 보조하는데 편리하도록 배려되어 있다(탈의실, 수납공간, 작업위치 등)		
	탁월(5가지이상), 우수(4가지), 보통(2~3가지), 미흡(0개 해당)		
A10. 시설설비 4 (여가프로그램실, 오락실)	이용하기 용이한 위치에 여가 프로그램실이 있다		
	T.V., 노래방 등 다양한 오락기구가 비치되어 있다		
	이용 노인의 수에 비해 적절한 규모의 공간이 제공되어 있다		
	휠체어 이용자의 이용도 가능하다		
	탁월(4가지모두), 우수(3가지), 보통(1~2가지), 미흡(0개 해당)		
확인내용			
A11. 시설설비 5 (상담실, 면회실)	상담실이 있고 잘 조성되어 있다		
	면회실이 있고 잘 조성되어 있다		
	상담실이 이용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다		
	면회실이 이용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다		
	가족이 면회하거나 이용할 공간이 있는가		
	집기 등 편의기구 등이 잘 구비되어 있다		
	탁월(5가지이상), 우수(4가지), 보통(2~3가지), 미흡(0개 해당)		
A12. 위생상태	식기소독을 매일 하고 있다		
	식품보관 장소가 위생적이다		
	음식공급자가 위생기준을 잘 지키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며 이에 따른 점검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		

평 가지 표	내 용	평 가	비 고
	식당직원들의 위생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탁월(4가지모두), 우수(3가지), 보통(1~2가지), 미흡(0개 해당)		
A13. 안전관리	적절한 소방시설이 되어 있다(스프링쿨러, 급수전, 감지기, 소화기 등 소방법 상의 시설물들의 설치 여부)		
	응급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구나 대피도구가 있다		
	대피훈련 및 안전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화재 및 대인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용자에게 낙상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탁월(5가지모두), 우수(3가지이상), 보통(1~2가지), 미흡(0개 해당)		

나. 관리 측면

평 가지 표	내 용	평 가	비 고
B1. 직원 기준 탁월 : 법정기준 모두 충족 우수 : 전문직만 충족 보통 : 법정기준 50%이상 미흡법정기준 50%미만	시설의 장 ○ 양로시설 : 사회복지사 2급이상 ○ 요양시설 : 사회복지사 2급이상 또는 의료인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총무		
	생활지도원(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 여자를 수용하는 시설에는 여자생활지도원을 두어야 함		
	생활보조원 ○ 양로시설 : 입소자 20인당 1인 ○ 요양시설 : 입소자 7인당 1인		
	전담의사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양로시설 : 입소자 50인당 1인 ○ 요양시설 : 입소자 25인당 1인(1인 이상은 간호사로 하여야 한다)		
	물리치료사(요양시설의 경우에만 1인 이상, 단 입소자가 10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을 더 두어야 한다)		

평 가 지 표	내 용	평 가	비 고
	사무원(입소자 100인 이상의 시설일 경우에만)		
	영양사(입소자 50인 이상일 경우에만)		
	취사부, 세탁부(입소자 50인당 각 1인 이상)		
B2. 직원 근무시간 및 근무행태(교대 및 주야간)	근무시간 준수여부		
	원활한 주야간 교대 여부		
	근무기록지 등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B3. 거주노인들에 대한 기록의 충실성 및 진실성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에 의한 진료 및 상담내용이 월 1회 이상의 빈도로 기록		
	상담기록의 충실성		
	투약등에 대한 기록 여부		
	ADL 의 정기적 판정		
	탁월(주5회이상), 우수(주3~5회미만), 보통(주2~3회미만), 미흡(주 2회미만)		
	IADL의 정기적 판정		
	(주2회이상 탁월), 2회 미만 미흡		
	사례회의 (1회성인지, 지속성여부)		
	Case별 파일 기록 및 정리		
B4. 분리 거주	남여별 분리 거주(부부가 거주하는 경우 예외)		
	거주노인 건강상태별 분리 거주(전염병, 식중독발생시 제외)		
	격리실(보호실) 설치 여부(격리보호실이 있는 경우 용도 및 필요성확인)		
B5. 사망노인	관련규정 여부 및 조치 내용(체계적인 장례절차, 거주노인참여여부등)		
B6. 직원교육	관리 및 인성관련 정기, 수시교육		
	탁월 : 전직원 1회이상, 우수 : 50%~100미만이 교육, 보통 : 직원30이상~50%미만		
	미흡 : 직원30%미만이 교육		
B7. 정기적 감독	관리·감독기관의 감독실시여부 및 현황, 내용(별도 첨부)		
B8. 의사결정 참여	생활 및 시설운영 등 의사결정에 참여여부(민원함 설치 여부 등)		

다. 서비스의 질 측면

평 가 지 표	내 용	평 가	비 고
C1. 거주노인의 의류 청결상태 (해당1항목에만 체크)	매일 세탁		
	평균 주 3회 세탁		
	평균 주 2회 세탁		
	평균 주 1회 이하 세탁		
	탁월(월 4회이상), 우수(3~4회미만), 보통(2~3회미만), 미흡(월1회이하)		
C2. 거주노인의 침구류 청결 상태 (해당1항목에만 체크)	월 1회 이상 세탁 및 일광 소독 (탁월)		
	월 1회 이상 세탁 (우수)		
	분기당 1회 이상 - 월 1회 미만 (보통)		
	평균 분기당 1회 미만 (미흡)		
C3. 식단의 작성 및 공급	식단의 변화가 있다		
	식단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영양사(보건소장)에 의해 식단을 작성한다		
	노인의 기호도나 선호도를 파악하여 식단을 만든다		
	탁월(4가지모두), 우수(3가지), 보통(1~2가지), 미흡(0개 해당)		
	고혈압 또는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위한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		
C4. 간식제공의 적절성 (해당1항목에만 체크)	매일 또는 주 6회 이상 제공 (탁월)		
	주 3~5회 제공 우수(5회이상), 보통3~5회미만, 미흡3회미만		
C5. 치매노인 예방과 치료보호를 위한 노력	치매노인예방과 보호를 위한 계획이 있다		
	치매예방 프로그램이 있다		
	치매교육 받은 전문인력인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있다		
	중증의 치매환자의 경우 병원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탁월(4가지모두), 우수(3가지), 보통(1~2가지), 미흡(0개 해당)		
C6. 적절한 의료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여부 (건강관리 및 투약)	정기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년1회이상)		
	이용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파악하고 있다		
	결핵 및 간기능 검사 등 특정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전염병이 있을 경우 필요한 관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용자의 규칙적인 투약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투약관리 및 간호일지 기록여부)		

평 가 지 표	내 용	평 가	비 고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정기적인 혈압, 혈당 측정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만성질환자가 년 4회 이상 의사를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될 경우 다른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만성질환자에게 투약, 증상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거동이 가능한 이용자에게 적절한 신체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적절한 물리치료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다		
확인내용			
C7. 자치활동 여부 (해당1항목에만 체크)	노인들의 자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들의 자치활동이 없다		
C8. 야외활동(온천, 공원 나들이, 공연관람 등) 여부 (해당1항목에만 체크)	연 8회 이상 (탁월)		
	연 5회이상 - 8회 미만 (우수)		
	연 4회이상 - 5회 미만 (보통)		
	연 4회미만 (미흡)		
	야외활동 없음		
온천, 공원나들이, 공연관람, 기관견학, 호도관광, 호도잔치, 외식 등			
C9. 외출이나 외박에 대한 배려 : 가족의 동의 고려 (해당1항목에만 체크)	허용		
	외출은 허용, 외박은 불허용		
	둘 다 불허용		
C10. 재산 및 금전처리의 적정성 (해당1항목에만 체크)	처리규정이 있고 기록으로 남긴다 (탁월)		
	처리규정 없으나 사용내용의 기록이 잘 되어 있다 (우수)		
	처리규정은 있으나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 않다 (보통)		
	아무런 절차나 기록이 없다 (미흡)		
C11. 자원봉사자, 후원자의 활동 (해당1항목에만 체크)	등록자원 봉사자 및 후원자가 있으며 활동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는 있으나 활동을 하지 않는다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도 없고 활동도 하지 않는다		
	자매결연기관 혹은 단체가 있다		

평 가지 표	내 용	평 가	비 고
※. 금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하고 있는가?	금전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시설이 관리하고 관리내용은 정기적으로 알려준다 (탁월).		
	금전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시설이 관리하고 관리내용은 요청시 알려준다 (우수)		
	모든 거주노인의 금전을 시설이 관리하고 관리내용은 정기적으로 알려준다. (보통)		
	모든 거주노인의 금전을 시설이 관리하고 관리내용은 요청시 알려준다. (미흡)		

라. 인권침해관련 개별조사항목

구 분	내 용	평 가	비 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관리자(직원)들의 말투		
	종교활동 강요 및 참여여부 결정권		
	불만 및 이의 신청에 대한 대응과 조치		
	당사자의 동의에 기초하여 수입(경로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액 등) 및 재산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 1년 이하 징역, 100만원 이하 벌금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여부 ●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투명한 시설 운영(기부금 관리 여부 등)		
	인권함 등 진정함 설치, 교육, 홍보 등 운영 여부		
	노인의 입소(위탁)에 대한 거부행위 여부 ● 50만원 이하 벌금		
신체의 자유침해	시설 입소 및 전원 결정에의 당사자 참여 여부		
	강제 노동이 있는지 여부 작업요법의 운영적절성(작업의 자발성-입소자 및 가족의 동의서, 의사의 작업처방, 적절한 보상, 환경이 좋은 재활작업장 운영 여부)		
	강제 격리여부		

구 분	내 용	평 가	비 고
신체의 자유침해	시설 입소 및 전원 결정에의 당사자 참여 여부		
	강제 노동이 있는지 여부 작업요법의 운영적절성(작업의 자발성-입소자 및 가족의 동의서, 의사의 작업처방, 적절한 보상, 환경이 좋은 재활작업장 운영 여부)		
	강제 격리		
신체의 자유 침해	가혹행위, 폭행 및 상해 행위 여부 ● 7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및 성희롱행위 ● 5년 이하 징역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노인에게 구걸을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5년 이하 징역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소홀히 하는 행위 ● 5년 이하 징역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보호절차의 불법행위(부양무가 없는자에 의한 시설 입소 및 긴급입소시 자치단체장에게 지체없는 보고 여부)		
	6개월마다 부양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 재결정(자치단체장) 여부(생활보장대상노인이 아닌 65세이상의 자 중 부양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에 한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 침해 여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개인정보 관리 및 유출 여부		
	통신수단(전화, 서신)이용 및 면회 제한 여부, 시설 외부 출입이 자유로운 환자가 전체 입소자의 몇 %인가		
	직무상 알게된 사항에 대한 비밀 준수 여부 ● 1년 이하 징역, 100만원 이하 벌금		
확인내용			

마. 설문지 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제 이름은 ○○○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다수인보호시설(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인권침해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의 계획에 따라 어르신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말씀해주시는 내용은 저희 위원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겠지만 노인복지시설의 발전을 위해 어르신의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어르신께서는 본 시설에서 생활하시면서 느끼신 것에 대해 아래의 질문에 『있다』, 『없다』, 『좋다』, 『좋지 않다』 등으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저 그렇다, 잘 모르겠다, 해당사항 없다는 답변일 시에는 표시를 하지 말고 공란으로 비워두기 바랍니다.

* 세부적으로 언급된 내용에 대해서는 비고란에 기입하기 바랍니다.

※ 참고로 아래의 설문지는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①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침해 관련 ②신체의 자유 침해 관련 ③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 침해 관련임.

조사원	
-----	--

ID			
----	--	--	--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침해 관련

순번	질문내용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 이다	나쁜 편이다	아주 나쁘다	비고 (세부·특이사항 기재)
문1.	침실과 화장실 등 시설전반						
문2.	냉·난방시설						
문3.	원장 및 관리자들의 관심과 노력						
문4.	경로연금관리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과 ○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서 65세 이상 노 인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보다 차상위 계층인 저소득 노인(1933. 7. 1.이전 출생)에 대하여 지급. 개인에게 지급						
문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로서 한달에 한번씩 수급액을 지 급받고 있는지(해당될 경우)						설문조사 전 먼저 시 설 측 확인
	○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 시·도에서 위탁하고 있는 시설일 경우 시설생계비 명목으로 노인 1인당, 월 114,000 시설장에게 지 급(그러나 위탁하지 않은 시설일 경우에는 1인 최고액 약 340,000 개인에게 지급)						
문6.	개인 돈의 소지 및 사용여부 (간식구입 등)						
문7.	밥과 반찬의 질						
문8.	옷이나 침구 등의 청결						
문9.	온수사용						
문10.	재활 프로그램						종류:

순번	질문내용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 이다	나쁜 편이다	아주 나쁘다	비고 (세부·특이사항 기재)
문11.	운동이나 오락						실시주기:
문12.	관리자들(의사 및 간호사 등)과의 충분한 면담 및 상담기회						
문13.	지역주민 등의 방문						
문14.	종교 활동 가능 여부						활동종교 및 방법:
문15.	종교활동 강요여부						
문16.	불만 및 요구사항 시정조치						방법:
문17.	입소(위탁)거부행위						
문18.	진정절차에 대한 설명 및 교육 여 부(진정함 설치여부 포함)						
문19.	개인물품 따로 보관 가능 여부						
문20.	옷, 양말, 신발 등 개인별 사용 여부						
문21.	언어적 학대 경험 여부						세부내용:
○ 예) 다른데로 보내버리겠다, 차라리 빨리 죽는게 낫다 등							

■ 신체의 자유 침해 관련

순번	질문내용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 이다	나쁜 편이다	아주 나쁘다	비고 (세부·사항 기재)
문22.	입소 및 전원결정의 당사자 참여						방법:
○ 입소경위(자의 혹은 가족요구 등), 퇴소 원하는지(사유) 등							
문23.	노동 행위 여부						종류:
*문24.	본인 의사와 관계없는 강제 노동						
문25.	노동 후 돈의 지급						방법:
*문26.	신체 학대행위 경험 (본인)						세부내용:
*문27.	신체 학대행위 목격여부(타인)						세부내용:
문28.	보호실, 격리실 등의 운영(외부 차단을 의미)						
*문29.	보호실, 격리실 등에 장시간 감금						
*문30.	성폭행 및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						세부내용:
*문31.	구걸을 강요하는 행위						세부내용:

* 문항의 경우, 세부질문으로

-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했나(예. 그냥 참고 했다(못본체했다), 싫다고 말했다 등)
- 그렇게 대처한 이유는 무엇인가(예. 더 심한 처벌을 받을까 봐, 다른 시설로 보내질까 봐 등)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 침해 관련

순번	질문내용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 이다	나쁜 편이다	아주 나쁘다	비고 (세부 · 특이사항 기재)
문32.	전화사용						방법:
○ 일주일에 몇 회 등							
문33.	편지이용						방법:
문34.	면회						방법:
○ 횟수, (지정)요일, 시간상의 제한이 있는지?							
문35.	시설외부출입 (치료상 불가피한 경우 제외)						방법:
○ 주 몇 회로 한정되어 있는지, 귀가시간은 몇 시인지 등							

문36. 다른 입소노인과 갈등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노인들간의 갈등, 다툼이 있을 경우 직원에 의해 제재가 가해질 수 있고, 때로는 벌칙의 명목으로 독방에 있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문37. 현재 생활하고 계신 본 시설의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좋은점 :
- 나쁜점 :

문38. 기타 하시고 싶으신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르신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문39. 어르신의 성별은? ①남자 ②여자

문40. 어르신의 연령은? ()세

문41. 어르신의 학력은?

- ① 초등학교 졸업
- ② 중학교 졸업
- ③ 고등학교 졸업
- ④ 대학교 이상 졸업
- ⑤ 기타(무 학력 등)

문42. 현재 지병이 있으신지

- ① 있다(병명 :)
- ② 없다

문43. 어르신의 예전 직업은? (구체적으로)

문44. 여기오시기 전 누구와 함께 사셨는지? ()

문45. 어르신의 입소 경위는?

문46. 어르신의 가족은?

문47. 어르신께서는 본 시설에서 거주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년

※ 기타. 조사원들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발견된 특이사항(참고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아래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3.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 2010.1.31] [법률 제9386호, 2009.1.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라 함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게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04.1.29]

제2조 (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가족제도의 유지·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노인실태조사)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7.1.3]

제6조 (노인의 날 등) ①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②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③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 <신설 2007.1.3>

제7조 (노인복지상담원) ①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개정 2007.8.3>

②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또는 위촉,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제8조 (노인전용주거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삭제 <2007.4.25>

제9조 삭제 <2007.4.25>

제10조 삭제 <2007.4.25>

제11조 삭제 <2007.4.25>

제12조 삭제 <2007.4.25>

제13조 삭제 <2007.4.25>

제14조 삭제 <2007.4.25>

제15조 삭제 <2007.4.25>

제16조 삭제 <2007.4.25>

제17조 삭제 <2007.4.25>

제18조 삭제 <2007.4.25>

제19조 삭제 <2007.4.25>

제20조 삭제 <2007.4.25>

제21조 삭제 <2007.4.25>

제22조 삭제 <2007.4.25>

제3장 보건·복지조치

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 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7.13]

제24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2.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3.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4.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제25조 (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 (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 (건강진단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

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8.3]

제28조 (상담·입소 등의 조치)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7.8.3, 2008.2.29>

1.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지도하게 하는 것
2.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3.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하여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복지실시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당해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치매관리사업)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업무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9조의2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①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한다.

②제1항의 치매상담센터의 업무, 인력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7.1.3]

제30조 (노인재활요양사업)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노인재활요양사업의 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제31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본문,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7.8.3]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입소비용 및 분양·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08.2.29>

③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9.2.8, 2003.5.29, 2007.8.3>

제33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8.3>

③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7.8.3, 2008.2.29>

제33조의2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소자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의 자라 하더라도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입소자격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에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대할 수 없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도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상속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한 자라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없으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노인 인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수요와 공급실태 및 노인복지주택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주택의 공급가구수와 가구별 건축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에 한한다)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⑥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당해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8.3]

제33조의3 (입소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노인복지주택의 처분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자격이 없는 자로서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한 자(상속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에게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②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08.2.29>

제35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③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은 「의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중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보건복지가족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8, 2007.4.11, 2008.2.29>

④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30>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노인휴양소 :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8.2.29>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비용부담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8.3]

제3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8.2.29>

제39조의2 (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요양보호사의 등급, 등급별 교육과정,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전문개정 2007.8.3]

제39조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 등) ①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전문개정 2007.8.3]

제39조의4 (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9]

제39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2.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3.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4.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그 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노인보호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그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4.1.29]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4.1.29]

제39조의7 (응급조치의무 등) ①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1.29]

제39조의8 (보조인의 선임 등) ①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원은 학대받은 노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39조의9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4.1.29]

제39조의10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이하 "실종노인"이라 한다)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3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실종노인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2. 실종노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3. 그 밖에 실종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07.8.3]
[중전 제39조의10은 제39조의11로 이동 <2007.8.3>]

제39조의11 (조사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8.3>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④제3항에 따른 증표의 내용·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본조신설 2004.1.29]

[제39조의10에서 이동, 중전의 제39조의11은 제39조의12로 이동 <2007.8.3>]

제39조의12 (비밀누설의 금지) ①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②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8.3>[본조신설 2004.1.29][제39조의12에서 이동 <2007.8.3>]

제40조 (변경·폐지 등 <개정 1999.2.8>) ①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5.3.31, 2008.2.29>

②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허가사항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2.8, 2008.2.29>

③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8.2.29>

④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2.8, 2005.3.31, 2007.8.3, 2008.2.29>

제41조 (수탁의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복지실시기관으로부터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동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입소·장례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제42조 (감독) ①복지실시기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7.8.3>

②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2.8,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3조 (사업의 정지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또는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5.3.31, 2007.8.3>

1. 제33조제3항·제35조제3항 또는 제3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삭제 <2007.8.3>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7.8.3>

1. 제37조제3항 또는 제39조제3항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삭제 <2007.8.3>
-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4조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제5장 비용

제45조 (비용의 부담) ① 삭제 <2007.4.2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7.13>

1.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2.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등과 상담·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제46조 (비용의 수납 및 청구) ①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②부양의무가 없는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준하는 보호를 행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부양의무자 및 복지실시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제2항의 보호를 행한 자는 부양의무자에게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비용의 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⑤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기초수급권자외의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한 비용수납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8, 2005.3.31, 2007.8.3,

2008.2.29>

⑥ 삭제 <1999.2.8>

⑦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48조 (유류물품의 처분)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제49조 (조세감면)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4.25>

제6장 보칙

제50조 (심사청구 등) ①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9.2.8>

④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호비용에 대하여 보호를 행한 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당사자로부터 조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 ① 복지실시기관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8.3>

②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업무범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삭제 <1999.2.8>

제53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4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 (「건축법」에 대한 특례 <개정 2007.8.3>) ①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3.21>

②이 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신설 1999.2.8, 2007.8.3>

제7장 벌칙

제55조의2 (벌칙) 제39조의9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04.1.29]

제55조의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한다)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9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 하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자 [전문개정 2007.8.3]

제55조의4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전문개정 2007.8.3]

제56조 (벌칙) ①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소자격자 아닌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위법하게 분양 또는 임대한 세대의 수에 1

천만원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33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7.8.3]

제56조의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양도 또는 임대한 자
2. 제3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입소·양도 또는 임대한 상속자[본조신설 2007.8.3]

제5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1.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제37조제2항·제39조제2항 또는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2. 제39조의11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전문개정 2004.1.29]

제58조 삭제 <2007.4.25>

제59조 (벌칙) 제41조를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1. 삭제 <2007.8.3>
2. 삭제 <2007.8.3>

제6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의3·제56조·제57조 또는 제5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7.8.3>

제61조 삭제 <2007.4.25>

제61조의2 (과태료) ①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의 답변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④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⑥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본조신설 2007.8.3]

제62조 (이행강제금)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노인복지주택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노인복지주택에 적용되는 주택가격의 공시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본조신설 2007.8.3]

부칙(의료법) <제9386호, 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제2조 삭제 <1999.8.7>

제3조 삭제 <1999.8.7>

제4조 삭제 <1999.8.7>

제5조 삭제 <1999.8.7>

제6조 삭제 <1999.8.7>

제7조 삭제 <1999.8.7>

제8조 삭제 <1999.8.7>

제9조 삭제 <1999.8.7>

제10조 삭제 <1999.8.7>

제11조 (노인의 날 등의 행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에 실시하여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2005.12.27, 2007.12.13, 2008.2.29>

제12조 (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외의 자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5.12.27, 2007.12.13>

②위촉한 상담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2.3.9, 2005.12.27, 2007.10.15>

제13조 (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1.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 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상담 및 지도

4. 노인의 단체활동 및 취업의 상담
5.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14조 (상담원의 보수) 상담원(공무원인 상담원과 보수없이 봉사할 것을 자원한 상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중 일반직 8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직무수당·기말수당·정근수당 및 기타수당을 포함한다)를 지급한다.

제15조 삭제 <2007.9.28>

제16조 삭제 <2007.9.28>

제17조 삭제 <2007.9.28>

제17조의2 삭제 <2007.9.28>

제17조의3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노인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 및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및 평가
6.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④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5.12.27]

제17조의4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위탁조건·수탁기관 선정방법·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5.12.27]

제18조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③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7.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한 노인에게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9조 (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5.29>

②65세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보여야한다.

제20조 (건강진단 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이 2년에 1회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은 복지실시기관이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복지실시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한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2 (노인복지주택 운영의 위탁)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

로부터 해당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을 것
2.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07.12.13][중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07.12.13>]

제20조의3 (긴급전화의 설치·운영) ①법 제3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긴급전화를 통한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과 그 밖의 세부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12.13, 2008.12.31>

[본조신설 2004.7.30][제20조의2에서 이동, 중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4로 이동 <2007.12.13>]

제20조의4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한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7.24]

제20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기준) 법 제3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05.12.27, 2006.6.12>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2.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본조신설 2004.7.30][제20조의4에서 이동 <2007.12.13>]

제21조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휴지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7, 2007.12.13, 2008.2.29>

②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휴지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

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1999.8.7, 2007.12.13, 2008.2.29>

제22조 (비용의 부담) ①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신설 2005.12.27>

②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과 상담·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7>

③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5.12.27>

제23조 (비용의 수납)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이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는 때에는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납하거나 청구한다. 다만, 당해 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이거나 수급권자가 아닌 자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그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3.9, 2005.12.27>

제24조 (비용의 보조)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30, 2007.12.13>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2.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5. 법 제3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12.27>

제25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 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②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13>

1.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노인의 의견수렴 및 수렴된 의견의 복지실시기관예의 건의
2. 제1호에 따른 시설 운영에 관련된 위법사항의 복지실시기관예의 신고

③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6조 삭제 <2007.12.13>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7.24]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2> 까지 생략

<133>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34> 부터 <175> 까지 생략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09.7.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2호, 2009.7.1,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제1조의2 (노인실태조사) 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의 가구구성,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부양 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노인의 보건의료 및 사회활동 실태에 관한 사항
5.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6. 노후준비 상황 및 노후준비 주체 등 노후생활의 인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인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본조신설 2007.5.8]

제2조 삭제 <2007.10.16>

제3조 삭제 <2007.10.16>

제4조 삭제 <2007.10.16>

제5조 삭제 <2007.10.16>

제6조 삭제 <2007.10.16>

제7조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이력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8.1.28, 2008.7.1>

② 제1항에 따라 위촉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위촉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역봉사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7.1>

제8조 (건강진단기관)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2.10, 2001.10.9, 2007.5.8, 2008.1.28, 2008.3.3>

1.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약국을 제외한다)
3. 삭제 <2001.2.10>
4.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

제9조 (건강진단)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실시기간·장소·진단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등을 정하여 건강진단 실시 예정일 14일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3.3>

제10조 (입소조치) 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을 노인주거복지시설등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입소의뢰서를 해당시설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당해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은 긴급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노인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노인을 입소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시설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입소의뢰서를 교부하거나 직접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제11조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 등 <개정 2006.10.20>)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업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10.20, 2008.3.3>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
3.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등에 대한 치매관련 전문교육의 실시
4. 치매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5. 재택치매관리사업
6.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보건의료 및 복지관련단체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10.20, 2008.3.3>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는 종합병원·사회복지법인 또는 보건의료 및 복지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10.20, 2008.3.3>

제12조 (치매상담센터의 업무 등) ①법 제29조의2에 따른 치매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3. 치매의 예방 및 치매환자의 간병요령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4. 재택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관리
5. 치매환자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의 입소 안내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의사·한의사·간호사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중에서 제1항의 업무를 전담할 치매상담전문요원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치매상담전문요원은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치매환자상담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치매상담전문요원에게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3>[전문개정 2007.5.8]

제13조 (노인재활요양사업의 지원) 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등 노인재활요양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복지실시기관은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등 노인재활요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14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기초수급권자"라 한다)로서 65세 이상의 자

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다.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제1항제1호라목 및 제2호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28]

제15조 (양로시설등의 입소절차등) ① 삭제 <2008.1.28>

- ②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수급권자는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10, 2008.1.28>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양로시설 입소자중 제14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 ⑤제14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8.1.28>
- ⑥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의한다. 이 경우 임대 또는 분양계약 신청자가 당해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되, 동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순위에 의한다. <개정 2007.5.8>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2.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자
 3.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
- ⑦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08.1.28>
- ⑧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에 의한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1999.8.25, 2008.1.28>

제15조의2 (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2. 제14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한다.
3. 제14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4.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본조신설 2008.1.28]

제16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8.1.28>

제17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 나.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

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노인전문병원

가.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환자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28]

제19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① 삭제 <2008.1.28>

②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10, 2008.1.28>

1. 건강진단서 1부

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기초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입소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입소자의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⑤제18조제1항제1호가목·라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시설에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8.1.28>

⑥제15조제7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8>

⑦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에 의한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⑧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당해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제19조의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본조신설 2008.1.28]

제20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6.7.3, 2008.1.28>

제21조 (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등) ①법 제3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1, 2005.6.8, 2005.10.17, 2006.7.3, 2007.5.8, 2008.1.28>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가.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사본(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다)·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1부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각 1부
4. 진료과목(「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을 말한다)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5. 의료보수표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노인전문병원설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병원 별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제22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법 제3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6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과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 내지 별표 4의 규정중 요양병원에 관한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9.8.25, 2007.5.8>

제23조 (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키거나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08.1.28>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시설의 장 및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1.28>

제24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28>

1.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
2. 경로당 : 65세이상의 자
3. 노인휴양소 : 60세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 다만, 이용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8>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함 각호의 서X<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한다)
4. 사업계획서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6.7.3, 2008.1.28>

제2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7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다. 단기보호서비스 :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

③ 제15조제7항은 제2항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1.28]

제27조의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기초수급권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4.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호 및 제3호 외의 자 :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본조신설 2008.1.28]

제28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9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2008.7.1>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6.7.3, 2008.1.28, 2008.7.1>

제2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29조의2 (요양보호사의 등급 및 교육과정 등) ①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등급은 1급·2급으로 하고, 등급별 교육과정은 별표 10의2와 같다.

②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사진(6개월 이내

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훼손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

⑤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8]

제29조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신고등 <개정 2008.1.28>) ①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1.28>

1.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별표 제10의3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 목록을 포함한다)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5.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③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10의 3과 같다. <개정 2008.1.28>

④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 수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1. 실습확인서(교육과정에 실습이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경력증명서(경력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국가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별표 10의2 제1호가목(3)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본조신설 1999.8.25]

제29조의4 (실종노인 신상카드) 법 제39조의10제2항의 신상카드는 별지 제20호의8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08.1.28][중전 제29조의4는 제29조의5로 이동 <2008.1.28>]

제29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 법 제39조의5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별표 10의4와 같다.[본조신설 2004.8.7] [제29조의4에서 이동, 중전 제29조의5는 제29조의6으로 이동 <2008.1.28>]

제29조의6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9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대상의 수, 지정기간, 신청절차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3>

②영 제20조의4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1. 노인복지시설신고증 사본
2.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을 기재한 서류
3.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계획서
4.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평면도(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노인인구, 업무범위 및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별지 제20호의10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관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1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서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1.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기관의 장의 이력서
2.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
3.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본조신설 2004.8.7]

[제2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9조의6은 제29조의7로 이동 <2008.1.28>]

제29조의7 (증표) 법 제39조의11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28>[본조신설 2004.8.7][제29조의6에서 이동 <2008.1.28>]

제30조 (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개정 1999.8.25>) ①법 제40조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폐지·휴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8.1.28>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삭제 <2008.1.28>
4.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40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소재지·입소(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또는 시설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99.8.25, 2005.6.8, 2008.1.28>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③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기관의 명칭·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기관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8.25, 2008.1.28>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8.25, 2008.1.28>

⑤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폐지·휴지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폐지·휴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8>

1. 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2.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신고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8>

제30조의2 (보고)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현황보고서를 다음해 1월 10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황보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1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현황보고서를 1월 3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2.29, 2008.3.3>[본조신설 1999.8.25]

제31조 (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처분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호비용의 청구) ①복지실시기관 또는 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법 제4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7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한 사실과 그 조치로 인한 비용부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조치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제33조 (비용수납의 신고등 <개정 1999.8.25>) ①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8.1.28>

1. 삭제 <1999.8.25>

2. 삭제 <1999.8.25>

②법 제4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한도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운영비에 생계보호비(주식비·부식비·연료비 및 피복비를 합산하되, 1천원미만의 금액은 버린다)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을 기준으로 하

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8.25>

제34조 (비용의 수납신고) ① 삭제 <1999.8.25>

②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8.1.28>

제35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의 발급) 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은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제36조 (서식)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소신청서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0.16, 2008.3.3>[전문개정 2001.2.10]

제36조의2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직원의 배치기준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모든 종사자가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도록 한 별표 4 제6호의 비고(3)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완화, 개선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7.1]

제3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1.28]

제38조 삭제 <2007.10.16>

부칙 <제437호, 2008.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3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별표 2부터 별표5까지,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별표 10의2 및 별표 10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별표 2·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

1. 시설기준 : 별표 2·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별표 2·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2. 인력배치기준 : 별표 2·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인력배치기준을 갖추어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기준은 별표 2·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별표 2·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된 노인복지시설을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2·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운영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한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별표 3·별표 5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기존 입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 중인 실비보호대상자는 제18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로 보며, 그 입소 또는 이용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한다.

제6조 (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신청서, 신고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2호, 2009.7.1>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 2008.7.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노인주거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양로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노인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노인복지주택 : 30세대 이상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2)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 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 (4)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절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병설·운영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입소자가 외부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운영할 수 있다.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노인복지주택은 임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나.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임대차계약·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 (2)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추는 것
- (3)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 (가)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 (나)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 (다) 무단 양도(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 (라)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마)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다.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또는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려는 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부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개원 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각각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보증내용 :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 (2) 보증가입금액 :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
- (3) 보증가입기간 : 보증금 납부일부부터 퇴소시까지
- (4) 보증가입관계 : 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 (5) 보험금 수령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하에 입소자가 보험금을 직접 수령함

3. 시설기준

시설별		구분		요양 보호사 및 자원 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체력 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 재해 대비 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샤워실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침실	사무실								
양로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	○	○	○	○	○	○	○	○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	○	○	○	○	○	○	○	○
노인공동생활가정		○	○	○	-	○	○	○	○	○	○
노인복지주택		침실 1, 관리실 1(사무실·숙직실 포함), 식당 및 조리실 1,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1, 의료 및 간호사실 1, 식료품점 또는 매점 1, 비상재해대비시설 1, 경보장치 1									

비고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4. 설비기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p>가. 침실</p> <p>(1) 독신용·합숙용·동거용 침실을 둘 수 있다.</p> <p>(2)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p> <p>(3)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5.0㎡ 이상이어야 한다.</p> <p>(4) 합숙용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p> <p>(5) 합숙용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6)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p> <p>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p> <p>다. 세면장 및 샤워실(목욕실)</p> <p>(1)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p> <p>(2)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의 출입이 자유롭게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p> <p>(3)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라.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마. 체력단련실 :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p> <p>바. 의료 및 간호사실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p> <p>사.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아. 그 밖의 시설</p> <p>(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p> <p>(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p> <p>(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p>	<p>가. 침실</p> <p>(1) 독신용·동거용·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다.</p> <p>(2)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p> <p>(3)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5.0㎡ 이상이어야 한다.</p> <p>(4) 합숙용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p> <p>(5) 합숙용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6)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p> <p>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p> <p>다. 세면장 및 샤워실(목욕실)</p> <p>(1)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p> <p>(2)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의 출입이 자유롭게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p> <p>(3)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라.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마. 그 밖의 시설</p> <p>(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p> <p>(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p> <p>(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p>	<p>가. 침실</p> <p>(1) 독신용·동거용 침실의 면적은 20㎡ 이상이어야 한다.</p> <p>(2) 취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p> <p>(3) 목욕실, 화장실 등 입소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p> <p>(4)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p> <p>나.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다. 체력단련실 :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p> <p>라. 의료 및 간호사실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p> <p>마. 경보장치 :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거실, 화장실, 욕실, 복도 등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p> <p>바.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 위생원 및 영양보호사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영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비고 : (1) 사회복지사 :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

(2) 영양보호사 : 영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5.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6. 직원의 배치기준

시설별	직종별	시설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양로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1명	필요수	입소자 50명당 1명	입소자 12.5명 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2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입소자 12.5명 당 1명			1명	1명	
	노인공동 생활가정	1명					입소자 3명당 1명					
	노인복지주택	1명		1명								1명

- 위생원 및 요양보호사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비고 : (1) 사회복지사 :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

(2) 요양보호사 :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별표 3] <개정 2008.7.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17조제2항 관련)

1. 건강관리(노인복지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에는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간호사, 그 밖의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전담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라 촉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촉탁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의사는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의 입소정원에 따른 방문횟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라.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입소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시설의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2. 급식위생관리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나. 전염성질환, 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입소보증금,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7)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9)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간담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라.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4.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가.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가 보증금을 수납하는 때에는 월 입소비용의 1년분 이내에서 이를 수납하여야 한다.

나. 노인주거복지시설(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설치한 자는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납한 보증금을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 회계

가.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그 밖에 시설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6.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시설운영일지

라. 예산서 및 결산서

마.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바.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사.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 문서철

- 아. 정관(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관계 질의서류
- 자. 입소자 관리카드(입소계약 체결일, 입소보증금, 이용료, 그 밖에 비용부담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 차. 연계의료시설과의 제휴계약서
- 카. 촉탁의사 근무상황부(촉탁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에서의 기거자

-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침실 또는 침실이 있는 건물마다 요양보호사, 그 밖의 직원 중 1명을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나. 시설 안에서는 입소자 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한다.

8. 사업의 실시

-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필요한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 나.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연령, 성별, 성격, 생활력, 심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입소자와 면담하거나 관찰, 지도하고 특이사항을 기록, 유지하여 보호의 정도에 따라 다른 노인복지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 시설의 장이 생활지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입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라. 시설의 장은 노인교실 등의 기관과 제휴하여 입소자가 교양교육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건전하고 활력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마. 시설의 장은 시설종류별로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 설 별	사업내용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가) 입소자의 생활의욕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교양·오락설비 등을 구비하고 적절한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노인복지주택	(가) 입주자의 거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편의를 위한 체육시설, 여가 및 오락시설 등 부대시설 및 각종 복리시설을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사회복지사는 순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항상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생활지도·상담 ②문안 ③긴급사태시 대처 ④의료기관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⑤일상생활상 필요한 원조 (다) 필요한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보건 및 복지에 관련된 사업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9.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시설의 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대표 및 법 제51조에 따른 노인복지명예지도원으로 구성된 운영간담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상황, 서비스 제공 상황 등 시설의 운영과 관리비 등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운영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4] <개정 2008.7.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2)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 (4)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절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병설·운영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입소자가 외부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운영할 수 있다.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는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나.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거나 입소자로

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임대차계약·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2)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춘 것
- (3)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 (가)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 (나)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 (다) 무단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의 변동)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 (라)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마)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다.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개원 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각각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보증내용 :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 (2) 보증가입금액 :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
- (3) 보증가입기간 : 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 (4) 보증가입관계 : 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 (5) 보험금 수령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하에 입소자가 보험금을 직접 수령함

3. 시설기준

시설별	구분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	○	○	○	○	○	○	○	○	○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		○	○	○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	○			○

- 비고 : (1)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물리(작업)치료실, 조리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물리(작업)치료실이 시설의 침실과 다른 층에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설비기준

가. 침실

- (1) 독신용·합숙용·동거용 침실을 둘 수 있다.
- (2)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 (3)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한다.
- (4)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 (5) 합숙용 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6)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7)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8)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두어야 한다.
- (9) 침실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 (10)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인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 (11)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목욕실

- (1)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마. 물리(작업)치료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의료 및 간호사실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사. 그 밖의 시설

- (1) 복도, 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4)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

치하고,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아.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축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물리 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추가)	필요수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수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필요수	1명	필요수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수	필요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1명			1명		입소자 3명당 1명					

- 위생원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영양사 : 영양사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비고 : (1) 사회복지사 :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
 (2) 요양보호사 :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3)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별표 5] <개정 2008.7.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관련)

1. 건강관리

- 가.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에는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나. 전담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가급적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 신경정신과 전문의로서의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촉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촉탁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의사는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의 입소정원에 따른 방문횟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한다.
- 라.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마. 입소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바. 시설의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2. 급식위생관리

-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 나. 전염성질환·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라.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운영규정

- 가. 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시설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

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3)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 (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 (7)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9)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10)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4.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가. 시설을 설치한 자가 보증금을 수납하는 때에는 월 입소비용 중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1년분 이내에서 이를 수납하여야 한다.

나.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을 설치한 자는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 회계

가.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기타 시설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시설운영일지

라. 예산서 및 결산서

마.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바.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사.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문서철

아.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및 관계질의서류

자. 입소자 관리카드(입소계약 체결일, 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차. 연계의료시설과의 제휴계약서

카. 촉탁의사 근무상황부(촉탁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시설에서의 기거자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거실 또는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요양보호사 기타 직원 중 1인을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 안에서는 입소자 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한다.

8. 사업의 실시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요양 및 재활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장은 입소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필요한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다.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연령·성별·성격·생활력·심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입소자와 면담하거나 관찰·지도하고 특이사항을 기록·유지하여 보호의 정도에 따라 다른 노인복지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시설의 장이 생활지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입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마. 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사무원·조리원·위생원·영양사·관리인을 제외한다)가 치매 및 중풍환자의 간병요령 등 치매환자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시설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기준
(가) 입소자의 생활의욕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교양·오락설비 등을 구비하고 적절한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라)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유의하여야 하며 건강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소자를 위하여 진료기관을 정하는 등 인근 지역의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바) 거동이 불가능한 외상노인의 욕창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치매노인은 치매의 정도에 따라 분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9.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별표 6] <개정 1999.8.25>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3항관련)

1. 설비시설

가. 물리치료실

나. 한방요법실(한방요법실을 두는 경우에 한한다)

2. 설비기준

가. 입원실

입원실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를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실에는 노인의 생활훈련 또는 재활훈련에 필요한 도구·장비 및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직원배치기준

가. 물리치료사(병원당 1인 이상을 두되, 연평균 1일 입원환자가 100인 이하인 경우에는 1인을 두고,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00인마다 1인씩을 더 두어야 한다)

나. 사회복지사(병원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별표 7] <개정 2008.1.28>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입지조건

노인휴양소는 노인에게 심신의 휴양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광지·온천지 등에 설치하도록 한다.

나. 시설의 규모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이거나 또는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노인복지관 :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
- (2) 경로당 : 이용정원 20명 이상(읍·면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 (3) 노인교실 : 이용정원 50명 이상
- (4) 노인휴양소 : 이용정원 20명 이상(객실은 10실 이상)

2. 시설기준

구분 시설별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면회실	집회실 또는 강당	프로그램 실	화장실	물리치 료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 시설	강의실	휴게실	객실	공동 목욕장	기타 부대 시설
노인복지관	1	1	1	1	1	1	1	1							
경로당						1			1	1					
노인교실	1					1					1	1			
노인휴양소		1				1							1	1	1

비고

- 1. 노인복지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
- 3. 노인휴양소 :
 - 가. 객실에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당 및 조리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객실에 목욕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공동목욕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설비기준

시설의 종류 구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설비기준	가.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물리치료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거실 또는 휴게실 :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가. 강의실 :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가. 객실 :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냉장고를 비치하여야 하며,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공동목욕장 : 남·녀별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노인복지관 시설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상담지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5.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상담지도원	강사 (외부강사포함)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노인복지관	1명	2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노인교실	1명		1명				
노인휴양소	1명						1명

비고

상담지도원 : 이용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

[별표 9] <개정 2008.12.3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

1. 시설의 규모

가. 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시설전용면적 16.5㎡(연면적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설의 정원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정원 : 5명 이상

(2) 시설 연면적 : 시설 연면적 각각 90㎡ 이상(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 이상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이 되어야 한다. 다만,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90㎡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시설기준

가. 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 시설

구분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방문요양서비스	1	1	-
방문목욕서비스	1	1	1

(1) 사무실 내에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2) 이동목욕차량이란 이동용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을 말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또는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거나,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포함한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 시설

구분		거실	침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건조장
주·야간 보호서비스	이용자 10명 이상	1		1	1	1	1	1	1	
	이용자 10명 미만	1		1	1	1	1	1	1	
단기 보호서비스	이용자 10명 이상		1	1	1	1	1	1	1	
	이용자 10명 미만		1	1	1	1	1	1	1	

비고 :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 가능하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 (1)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거나,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거실, 침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다.
- (2)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또는 방문간호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설비기준(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가. 시설의 규모·구조 및 설비는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며, 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 복도·화장실·거실·침실 등 이용자가 통상 이용하는 시설은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 설비를 부착하며, 바닥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등 이용자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배수 설비

- (1) 급수설비는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2)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3)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건물 내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건물 내에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그 밖의 설비

- (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4)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이용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사. 다음의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거실

- (가) 치매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거실을 두어야 한다.
- (나)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침실

- (가) 독신용·동거용·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다.
 - (나)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구분하여야 한다.
 - (다) 이용자 1명당 침실 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한다.
 - (라)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 (마) 합숙용 침실에는 이용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바) 이용자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두어야 한다.
 - (사) 침실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 (아)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 (자) 치매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침실을 두어야 한다.
 - (차)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사무실 :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비품 및 탈의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 (4) 의료 및 간호사실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5) 작업 및 일상생활동작 훈련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설비와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6) 식당 및 조리실(다만, 급식제공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두지 않을 수 있다)
- (가)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나)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7) 세면장 및 목욕실
- (가)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나) 욕탕사위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다)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이용자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 (라) 급탕을 자동온도조절 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8) 세탁장 및 건조장 : 세탁 및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4.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요양보호사 1급으로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5. 직원의 배치기준

구 분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자)
방문요양서비스	1명	1명			3명 이상 (※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2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방문목욕서비스	1명				2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주·야간 보호서비스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1명 이상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이용자 10명 미만	1명		1명 이상				
단기보호 서비스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용자 25명당 1명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이용자 10명 미만	1명		1명				

※ "농·어촌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읍·면 전 지역 또는 동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비고 :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 중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만이 제공할 수 있음

<도표 설명 예>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간호(조무)사와 물리(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의 인원을 두어야 한다.

가. 시설의 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로 두어야 한다.

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장이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그 사업의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

업)치료사, 영양보호사는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 (1) 사회복지시설에서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는 겸직할 수 있다.
- (2)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이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영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으면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영양보호사 1급과 각각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